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4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선 주

목 차

제1장 개요

I. 세입·세출 결산	1
1. 세입 결산	1
2. 세출 결산	4
1) 세출 총괄	4
2) 세출예산 전용내역	5
3) 세출예산 불용내역	6
4) 세출예산 이월내역	7
II. 재무제표	14
1. 재정상태표	14
2. 재정운영표	15
3. 순자산변동표	16
III. 성과보고서	17
1. 성과체계	17
2. 2024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9

제2장 검토의견

1.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수납률 제고 노력 필요	21
2. 연구개발 결과의 적극적인 공개 필요	25
3. 상용임금 집행계획 수립 필요	29
4. 국외여비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32
5.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 국회 결산 및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반영한 예산 편성·집행 필요	36
6.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공정거래협약 참여 확대 및 방안 마련 필요 등	41
(1)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비지수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42
(2) 유통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개선을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46
7. 공정거래지원: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	49
8.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평가의 투명성 제고 및 불용 최소화	55
(1) 소비자정책 추진 실적 평가 결과 전체 공개를 통한 평가의 투명성 제고 ..	56
(2) 예산의 과다편성 주의 및 집행비목에 맞는 연구용역 실시	65
9.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소비자단체 상담위탁 사업 관리 철저	68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69
(2) 수의계약 법적근거 마련	74

10. 한국소비자원 출연	77
(1) 연례적인 수입결손 발생	79
(2) 소비자역량강화 및 정보제공: 정보화사업 집행 관련규정 준수 필요 ...	84
1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92
(1) 공정거래연구사업: 자체수입사업으로 수탁연구 편성·집행 필요	94
(2) 전산운영지원 사업: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사용규정 등 준수 필요 ·	99
※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05

제1장 개요

I.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 2024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4,501억 6,200만원임.
7,511억 6,2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1,729억 2,200만원이 수납되고,
5,778억 4,4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3억 9,6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
되었음.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38.4% 수준임.

〈2024회계연도 세입 실적〉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결산상	순수 ¹⁾
합 계	450,162	751,162	172,922	396	577,844	91,311
재산수입	6	12	10	-	2	2
- 기타재산수입	6	12	10	-	2	2
경상이전수입	450,156	751,149	172,910	396	577,842	91,309
- 과 정 금	445,557	735,182	169,627	396	565,158	78,741
- 과 태 료	2,705	3,812	1,729	-	2,083	1,968
- 위 약 금	1	-	-	-	-	-
- 가 산 금	473	10,184	274	-	9,910	9,910
- 기타경상이전수입	1,420	1,962	1,276	-	686	686
- 징계부가금	-	9	4	-	4	4
잡수입	-	1	1	-	-	-
- 기타잡수입	-	1	1	-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 순수미수납액(임의채납액)

□ 수납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과징금 수입이 1,696억 2,7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대부분(98.1%)을 차지하고 있음.

○ 과징금 수입은 쿠팡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271억원²⁾), 만호제강의 부당한공동행위(168억원), 넥스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116억원) 등에서 기인하였고, 과태료 수입은 공시규정 위반(6억 1,000만원),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3억 8,267만원) 등에서 기인함.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른 소송비용의 환수 등(12억 7,600만원)이며, 가산금 수납액은 2억 7,4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수납액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과징금	과태료	기타경상이전수입	가산금	기타	합계
169,627 (98.10)	1,729 (1.00)	1,276 (0.74)	274 (0.16)	15 (0.01)	172,922 (100.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전체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납기미도래액이 3,028억 4,455만원, 폐업 또는 무재산 등에 따른 임의채납액이 913억 1,100만원 등임.

○ 이 중 과징금의 미수납액은 5,651억 5,8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7.8%에 해당이며, 그 중 납기미도래액이 3,028억 4,455만원, 징수유예액 1,835억 7,250만원, 임의채납액은 787억 4,098만원임.

2) 6회 분납 건(1,628억원) 중 1회 납부 건을 2024년 말에 납부함

- 과태료의 경우 납기미도래액이 1억 1,535만원, 임의체납액이 19억 6,785만원이고, 그 밖에 소송비용환수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가산금, 기타재산수입 및 징계부가금에서 기인한 미수납액은 106억 355만원임.

〈2024회계연도 세입 미수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미수납 사유	미수납액
과징금 (공정거래법 등 위반)	○ 납기 미도래	302,844
	○ 징수유예(집행정지)	183,573
	○ 임의체납(폐업, 체납자 재력부족, 거소불명 등)	78,741
소 계		565,158
과태료 (공정거래법 등 위반)	○ 납기 미도래	115
	○ 징수유예(집행정지)	-
	○ 임의체납(폐업, 체납자 재력부족, 거소불명 등)	1,968
소 계		2,083
가 산 금	○ 임의체납(폐업, 체납자 재력부족, 거소불명 등)	9,910
기타경상이전수입	○ 임의체납(폐업, 체납자 재력부족, 거소불명 등)	686
기타재산수입	○ 임의체납	2
징계부가금	○ 임의체납(체납자 재력부족 등)	4
소 계		10,602
합 계		577,84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세출 결산

1) 세출 총괄

□ 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1,584억 2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8억 8,000만원 등을 합한 예산현액 1,603억 900만원 중 97.1%인 1,556억 1,371만원이 집행되고, 0.1%인 1억 9,875만원은 이월되고 2.8%인 44억 9,700만원은 불용되었음.

□ 세출예산의 집행내역을 경비별로 살펴보면, 전체 집행액의 33.5%인 520억 6,800만원이 인건비로 집행되었고, 5.4%인 84억 4,100만원은 기본경비로, 61.1%인 951억 500만원은 사업비로 각각 집행되었음.

〈2024회계연도 세출 실적〉

(단위: 백만원, %)

경비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증감	전용 증감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C)	비율	
									B/A	C/A
합 계	158,429	1,880	-	1,197 △1,197	160,309	155,614	199	4,497	97.1	2.8
인건비	53,650	-	-	-	53,650	52,068	-	1,582	97.1	2.9
기본 경비	8,921	-	-	49 △50	8,920	8,441	17	463	94.6	5.2
사업비	95,858	1,880	-	1,148 △1,147	97,739	95,105	182	2,452	97.3	2.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세출예산 전용내역

□ 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전용액은 11억 9,695만원으로 주요 전용 발생 사유는 감사원 국가결산검사에 따른 조치결과, 행정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및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 등에 따른 것임.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구체적 전용 사유	금 액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³⁾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예산 전용(일반용역비 → 일반연구비)	981
사업량 증가	○ 행정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충당	100
	○ 국내여비 집행액 부족분 충당	55
	○ 일반수용비 집행액 부족분 충당	51
	○ 고용부담금 집행액 부족분 충당	9
	○ 기타운영비 집행액 부족분 충당	1
합 계		1,19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지식기반의 조사 용역에 해당하는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의 예산을 일반연구비(260-01목)가 아닌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세출예산 불용내역

- 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44억 9,700만원으로 집행잔액에 해당함.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구 체 적 불 용 사 유	금 액
집행잔액	○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1,515
	○ 기타 집행잔액	2,982
합 계		4,49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4) 세출예산 이월내역

- 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이월액은 1억 9,875만원으로 구체적인 발생사유는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임.

〈2024년도 세출 예산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 예산액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이월 사유
				명시이 월	사고이 월		
합 계	5,121	5,191	4,895	0	199	98	
일반회계	5,121	5,191	4,895	0	199	98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5,121	5,191	4,895	0	199	98	
016관(부문) 일반행정	5,121	5,191	4,895	0	199	98	
1200항(프로그램) 경쟁촉진	429	459	429	0	20	10	
1231세항(단위사업) 선진 경쟁정책 추진	349	349	331	0	8	10	
260목 연구용역비	349	349	331	0	8	10	경쟁입찰, 계약 등 기간 소요
1251세항(단위사업) 독과점시장환경개선	80	110	98	0	12	0	
260목 연구용역비	80	110	98	0	12	0	계약 및 수행지연
7000항(프로그램) 공정거래행정지원	4,683	4,723	4,460	0	178	86	
7011세항(단위사업) 기본경비	683	614	577	0	17	21	
210목 운영비	683	614	577	0	17	21	공공요금 납부

구 분	세출 예산액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이월 사유
				명시이 월	사고이 월		
7031세항(단위사업) 행정지원	3,126	3,235	3,229	0	6	0	
210목 일반수용비	3,126	3,235	3,229	0	6	0	공공요금 납부
7032세항(단위사업) 공정위 정보화	874	874	654	0	155	65	
260목 연구용역비	874	874	654	0	155	65	사업종료('25.1월) 일정에 따른 잔금 집행
1400항(프로그램) 소비자후생 증진	9	9	6	0	1	2	
1451세항(단위사업) 소비자보호 인프라 운용	9	9	6	0	1	2	
210목 운영비	9	9	6	0	1	2	공공요금 납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2025 예산
			예산(A)	결산(B)	집행률 (B/A)	
총 계	154,841	158,320	158,429	155,614	98.2	163,370
1200 경쟁촉진	19,000	20,824	20,246	18,480	91.3	21,732
1231 선진경쟁정책추진	1,552	2,203	1,790	1,746	97.5	1,947
정책연구개발사업 (1231-310)	391	359	349	331	94.8	289
대외활동강화 (1231-311)	306	444	394	390	99.0	618
개도국기술지원 (1231-312)	102	63	78	69	88.5	79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1231-503)	753	1,336	969	956	98.7	961
1241 카르텔대응강화	283	357	391	373	95.4	842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283	357	391	373	95.4	842
1251 독과점시장환경개선	5,650	5,677	5,331	3,718	69.7	5,557
독과점시장감시체계운영 (1251-330)	3,436	3,695	3,320	1,738	52.3	3,470
사익편취행태개선 (1251-331)	321	360	370	356	96.2	402
기업집단포탈시스템 운영(정보화) (1251-332)	1,893	1,622	1,641	1,624	99.0	1,685
1261 시장구조개선	539	930	992	901	90.8	629
규제개선및경제분석 (1261-340)	539	930	992	901	90.8	629
127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출연	10,976	11,657	11,742	11,742	100.0	12,757
한국공정거래조정원출연 (1271-350)	10,976	11,657	11,742	11,742	100.0	12,757

구 분	2022 결 산	2023 결 산	2024			2025 예 산
			예 산(A)	결 산(B)	집 행 률 (B/A)	
1300 중소기업경쟁여건	2,317	2,435	3,313	3,072	92.7	3,219
1331 대중소기업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2,317	2,435	3,313	3,072	92.7	3,219
대중소기업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1331-400)	1,433	1,461	2,326	2,094	90.0	1,718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1331-401)	884	974	987	978	99.1	1,501
1400 소비자후생증진	60,105	60,087	60,511	60,316	99.7	61,477
1431 선진소비자정책추진	1,018	1,159	1,389	1,337	96.3	1,792
선진소비자정책추진 (1431-600)	1,018	1,159	1,389	1,337	96.3	1,792
1441 소비자권익증진지원	2,995	2,748	1,234	1,172	95.0	1,234
소비자권익증진지원 (1441-610)	2,995	2,748	1,234	1,172	95.0	1,234
1451 소비자보호인프라운용	5,752	5,327	5,046	4,965	98.4	4,755
소비자상담센터운영(정보화) (1451-620)	4,016	3,561	3,628	3,592	99.0	3,527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운영 (정보화) (1451-621)	1,736	1,766	1,418	1,373	96.8	1,228
1461 한국소비자원출연	50,341	50,853	52,842	52,842	100.0	53,696
한국소비자원출연 (1461-630)	50,341	50,853	52,842	52,842	100.0	53,696
7000 공정거래행정지원	73,395	74,974	74,359	73,745	99.2	76,942
7001 인건비	50,287	51,419	53,650	52,068	97.1	56,152
총액인건비성인건비 (7001-100)	50,287	51,419	53,650	52,068	97.1	56,152
7011 기본경비	9,301	9,341	8,921	8,441	94.6	8,935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00)	3,054	3,082	3,207	2,931	91.4	3,316

구 분	2022 결 산	2023 결 산	2024			2025 예 산
			예 산(A)	결 산(B)	집 행 률 (B/A)	
심판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01)	56	66	72	66	91.7	74
기획조정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02)	34	34	66	34	51.5	51
경쟁정책국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03)	15	19	26	20	76.9	26
조사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4)	17	10	17	15	88.2	20
소비자정책국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05)	25	18	20	17	85.0	20
시장감시국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06)	21	26	20	20	100.0	20
카르텔조사국 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7)	75	72	83	75	90.4	85
기업협력정책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08)	20	20	23	15	65.2	23
서울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09)	262	268	280	290	103.6	281
부산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10)	99	111	90	111	123.3	92
광주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11)	75	74	70	77	110.0	70
대전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12)	63	66	59	70	118.6	59
대구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13)	61	65	56	68	121.4	56
기업집단감시국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14)	64	62	58	58	100.0	60

구 분	2022 결 산	2023 결 산	2024			2025 예 산
			예 산(A)	결 산(B)	집 행 륜 (B/A)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15)	16	27	27	32	118.5	27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0)	1,563	1,827	1,552	1,455	93.8	1,346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346	438	514	549	106.8	325
기획조정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2)	605	541	730	652	89.3	716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3)	412	408	371	377	101.6	376
조사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4)	70	70	175	187	106.9	198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5)	177	143	145	123	84.8	145
시장감시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6)	51	84	119	108	90.8	119
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7)	84	102	132	111	84.1	138
기업협력정책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8)	54	98	80	88	110.0	80
서울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9)	1,412	686	199	195	98.0	231
부산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0)	199	484	218	228	104.6	211
광주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1)	55	71	95	96	101.1	348

구 분	2022 결 산	2023 결 산	2024			2025 예 산
			예 산(A)	결 산(B)	집 행 률 (B/A)	
대전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2)	65	77	87	72	82.8	87
대구사무소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3)	54	75	85	80	94.1	81
기업집단감시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4)	120	117	134	95	70.9	136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5)	76	101	111	127	114.4	118
7031 행정지원	6,160	6,380	6,829	6,674	97.7	7,109
공정거래지원 (7031-300)	873	811	1,389	1,298	93.4	1,157
행정소송수행 (7031-301)	3,166	3,278	3,286	3,248	98.8	3,886
전산운영경비(정보화) (7031-302)	2,121	2,291	2,154	2,129	98.8	2,066
7032 공정위 정보화	6,095	7,833	4,959	6,562	132.3	4,746
정보화기반확충(정보화) (7032-501)	3,454	2,658	3,472	3,239	93.3	3,259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정보화) (7032-502)	2,641	5,175	1,487	3,323	223.5	1,48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II.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 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당기 자산은 전기 대비 약 59.7% (1,082억 원) 증가한 2,894억 원으로, 이는 주로 과징금 등 제재금 징수결정액 증가에 따른 미수채권의 순증가(193억 원), 제재금 징수결정액 중 1년 이후 회수 예정인 미수납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인식함에 따라 발생한 장기미수채권의 순증가(875억 원) 등에 기인함
- 부채는 전기 대비 45.4%(127억 원) 감소한 279억 원으로, 이는 주로 장기차입금 감소로 장기차입부채가 19억 증가(순증), 소송충당부채 감소 등으로 장기충당부채가 150억 원(△53.8%) 감소 등에 기인함

〈2024년도 재정상태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A)	2023년(B)	증 감 (A-B)	
			금 액	증감율
자 산	289,413	181,184	108,229	59.7 %
부 채	15,218	27,889	△12,671	△45.4 %
순자산	274,195	153,295	120,900	78.9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재정운영표

- 당기 재정운영 프로그램순원가는 전기 대비 약 2.2%(18억 원) 감소한 822억원인데, 이는 주로 보전비 감소 등에 따른 경쟁촉진 감소(△27억 원) 및 한국소비자원 출연금 증가 등 소비자후생 증진 증가(7억 원) 등에 기인함
- 관리운영비는 전기 대비 2.8%(23억 원) 증가한 822억 원으로, 이는 주로 지급단가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8억 원), 외주용역비 및 감가상각비 등 경비 증가(15억 원) 등에 기인함
- 비배분비용은 전기 대비 231.8%(1,279억 원) 증가한 1,831억 원으로 이는 주로 대손상각비 증가(1,496억 원), 소송충당부채전입액의 감소 등 기타비용 감소(△216억 원) 등에 기인함

〈2024년 재정운영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A)	2023년(B)	증 감 (A-B)	
			금 액	증감률
I. 프로그램순원가	82,183	84,013	△1,830	△2.2 %
II. 관리운영비	82,216	79,941	2,275	2.8 %
III. 비배분비용	183,144	55,202	127,942	231.8 %
IV. 비배분수익	1,285	1,334	△49	△3.7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346,258	217,821	128,437	59.0 %
VI. 재정운영결과	346,258	217,821	128,437	59.0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3. 순자산변동표

- 기말 순자산은 전기 대비 1,209억 원 증가한 2,742억 원으로 이는 기초순자산 1,533억 원, 순자산변동표의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 3,463억 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672억원 등으로 구성됨.

〈2024년 순자산변동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A)	2023년(B)	증 감 (A-B)	
			금 액	증감률
I. 기초 순자산	153,295	450,472	△297,177	△66.0
II. 재정운영결과	346,258	217,821	128,437	59.0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467,191	△79,159	546,350	690.2
IV. 조정항목	△33	△198	165	83.3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274,195	153,295	120,900	78.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Ⅲ. 성과보고서

1. 성과체계

- 공정거래위원회 임무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며, 비전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체계는 3개의 전략목표와 4개의 프로그램 목표, 1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성과체계 현황〉

구분	전략 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소 계	일반재정	정보화	R&D
개수(개)	3	4	12	10	2	-
비율(%)	100%	100%	100%	83.3%	16.7%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성 과 목 표	단 위 사 업	분 야
---------	---------	-----

전략목표Ⅰ :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 한다.	(1) 선진 경쟁정책 추진	일반재정
	(2)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일반재정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일반재정
	(4) 카르텔대응강화	일반재정
	(5) 시장구조개선	일반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1) 행정지원	일반재정
	(2) 공정위 정보화	정 보 화

전략목표Ⅱ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여건을 마련 하여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1)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일반재정
--	---------------------------------	------

전략목표Ⅲ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 선진적 소비자정책 추진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한다.	(1) 선진 소비자정책 추진	일반재정
	(2)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일반재정
	(3) 소비자보호 인프라 운용	정 보 화
	(4) 한국소비자원 출연	일반재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2024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는 4개 프로그램 목표에 총 4개의 성과지표⁴⁾가 설정되어 있으며 달성은 2개, 미달성은 2개임.⁵⁾

〈성과목표별 달성 현황〉

구 분	2023 달성	2024 달성	2024결산 (억원)
전략목표Ⅰ: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한다.			
□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한다. (Ⅰ-1)			185
· 공정거래 분쟁 조정 사건 처리율(단위:%)	신규	X	
□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Ⅰ-2)			111
· 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단위:%)	○	○	
전략목표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여건을 마련하여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Ⅱ-1)			31
·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만족도(단위:점)	신규	X	-
전략목표Ⅲ: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 선진적 소비자정책 추진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한다. (Ⅲ-1)			603
· 소비자 피해해결 조치비율(단위:%)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4)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를 원칙으로 하는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기존 10개의 성과지표에서, 프로그램(4개) 당 1개씩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4개의 성과지표로 변경함. 이중 2개의 성과지표는 신규 지표이며, 2개의 성과지표는 기존 지표임.

5) 성과를 달성한 2개의 지표는 기존에 설정된 지표이며, 미달성 2개 지표는 모두 2024년 신규로 설정된 지표로 달성률이 각각 96.0%, 99.1%로 100% 달성에 이르지 못함

□ 단위사업별로는 전체 12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4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고, 달성률은 각각 96.0%, 100.8%, 99.1%, 101.0%로 나타남.

〈단위사업별 달성 현황〉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지표 유형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22년	'23년	'24년
전략목표Ⅰ: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한다.	① 공정거래 분쟁조정 사건 처리율(%)	결 과	공정거래 분쟁조정 사건 처리율 = (처리사건/접수사건) *100	목 표	신규	신규	80.74
				실적	신규	신규	77.50
				달성률	-	-	96.0%
프로그램목표Ⅰ-2 :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② 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	결 과	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50%)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성과 달성도(50%) 27지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	목 표	85.2	89.2	91.3
				실적	88.8	90.9	92.0
				달성률	104.2%	101.9%	100.8%
전략목표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프로그램목표Ⅱ :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여건을 마련하여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①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만족도(점)	결 과	세부항목에 대한민족도 및 전반적인체감만족도를 11단계로 평가하여 이를 0~100점으로 환산(단기간 10점 차한뒤 세부항목별 만족도의 산술평균 70% + 전반적인체감만족도 30%)	목 표	신규	신규	68.8
				실적	신규	신규	68.2
				달성률	-	-	99.1%
전략목표Ⅲ: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프로그램목표Ⅲ : 선진적 소비자정책 추진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한다	① 소비자 피해해결 조치비율(%)	결 과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중 피해해결로 처리한 비율(소비자원 제외)	목 표	23.6	28.4	29.6
				실적	29.7	30.4	29.9
				달성률	125.8%	107.0%	101.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2장 검토의견

1.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수납률 제고 노력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의무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징수결정액 38억 1,200만원 중 17억 2,900만원이 수납(수납률 45.4%)되고 미수납액 20억 8,300만원이 발생하였음.
-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등을 위반한 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징수결정액 7,351억 8,200만원 중 1,696억 2,700만원이 수납(수납률 23.1%)되고 불납결손액 3억 9,600만원, 미수납액 5,651억 5,8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 “가산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징수결정액 101억 8,400만원 중 2억 7,400만원이 수납(수납률 2.7%)되고 미수납액 99억 1,000만이 발생하였음.

〈2024 회계연도 과태료·과징금·가산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명	2024								2025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과태료	2,705	2,705	-	2,705	3,812	1,729	2,083	-	2,705
과징금	445,557	445,557	-	445,557	735,182	169,627	565,158	396	534,811
가산금	473	473	-	473	10,184	274	9,910	-	49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과태료는 각각 67.5%, 52.9%, 53.7%, 45.3%이고, 과징금은 각각 59.8%, 55.7%, 65.9%, 23.1%이며, 가산금은 각각 1.9%, 6.1%, 3.2%, 2.7%로서 연례적으로 저조한 상황임.
-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납기미도래 및 징수유예(집행정지 등)로 해당 연도에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재력 부족이나 폐업 등에 따른 경우 등에 따른 것인데, 특히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미납되고 있기 때문임.
- 과징금의 경우 5년 이상 장기 체납 과징금이 36.5%이고, 과태료는 54%에 달함.

〈체납 발생 경과 기간에 따른 과태료 · 과징금 · 가산금 미수납액〉

(단위: 백만원, %)

체납발생경과기간	과징금			과태료			가산금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1년 미만	26	5,147	6.5	131	251	12.7	6	210	2.1
1년 이상~2년 미만	26	13,563	17.2	57	152	7.7	3	2	0.0
2년 이상~3년 미만	34	17,308	22.0	51	100	5.1	7	110	1.1
3년 이상~4년 미만	26	10,887	13.8	45	188	9.5	135	9,525	96.1
4년 이상~5년 미만	21	3,083	3.9	104	219	11.1	4	0.1	0.0
5년 이상	116	28,753	36.5	324	1,069	54.0	30	63	0.6
총 계	249	78,741	100.0	711	1,980	100.0	185	9,910	10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과징금의 경우 고액의 징벌적 과징금이 수납률 저조의 주요 원인임.

○ 징벌적 과징금이 전체 미수납 과징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로서 이는 사업자의 재정 여력 부족, 소송진행 등의 사유에 따른 것임.

〈과징금의 형태별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 건수
계	735,182	169,627	565,158	714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15,744	11,740	4,004	4
징벌적 과징금	719,438	157,887	561,154	710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가 해당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과징금·과태료·가산금은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에 따른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수범자의 납부 회피를 국가가 방치하면 그 규범력이 무력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가 그 징수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임무이고, 세입 예산으로서 안정적 지출의 재원조달의 측면에서도 높은 수납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한 징수 절차 진행을 통해 미수납 채권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개발 결과의 적극적인 공개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회계연도에 완료한 연구개발과제는 25건으로
총 예산액 9억 4,500만원 중 9억 3,100만원을 집행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구개발을 통해 실시한 연구개발 결과물의
대부분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6)의

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적으로만 공개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구개발과제 결과의 공개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연구개발 과제 29건 중 8건만 공개(공개율 28%)하였고, 2022년에는 31건 중 5건(16%), 2023년에는 29건 중 6건(21%), 2024년에는 25건 중 4건(16%)만 공개하였음.

〈연도별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구개발과제 공개 수준 추이〉

(단위: 건, %, 백만원)

연도	연구개발과제건수			해당연도 과제 완료			총 예산	
	수의 계약 (비율)	경쟁 입찰 (비율)	합계 (비율)	공개 (비율)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비율)	합계 (비율)	예산	집행
2020년	16(73)	6(27)	22(100)	10(45)	12(55)	22(100)	1,009	992
2021년	20(69)	9(31)	29(100)	8(28)	21(72)	29(100)	1,305	1,245
2022년	24(77)	7(23)	31(100)	5(16)	26(84)	31(100)	1,463	1,429
2023년	13(45)	16(55)	29(100)	6(21)	23(79)	29(100)	1,711	1,339
2024년	15(60)	10(40)	25(100)	4(16)	17(71)	25(100)	945	93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024년 종료과제의 연구결과 공개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예산 액	집행 액	공개 여부	비공개 기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제정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40	40		2026.4.30.
2024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에 관한 연구	66	66	공개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30	30		2026.3.12.
전속대리점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연구	35	35		2026.6.10.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40	40	공개	
전자상거래법 조치 수준 합리화 관련 연구	41	40		2026.12.4.
기후테크 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50	50		2026.10.8.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연구	20	20		2026.12.22.
필수품목 관련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연구	40	40	공개	
제빵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49	49		2026.9.29.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공제계약 관련 법제 개편연구	40	40		2027.1.14.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지원, 위반금액 산정 관련 과징금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40	40		2026.12.26.
AI 시장 실태조사 연구	60	60		2026.3.28.
주류산업 분야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50	50		2026.11.4.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35	31		2026.4.11.
정보교환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경제분석 방법 연구	40	40	공개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건 경제분석 연구	20	20		2027.2.13.
정보공개서 심사-등록 체계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35	35		2026.7.22.
해외 경쟁당국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법 집행 동향 연구	18	18		2027.2.21.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개선방안 연구	34	34		2026.12.24.
의료기기 간접 납품회사와의 거래 실태조사	50	41		2026.3.26.
기후테크산업 부문 경쟁법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43	43		2029.11.30.
라이브 커머스 시장 실태 연구	13	13		2027.1.12.
사업기획 제공행위 적용 범위와 적용요건 등 연구	30	30		2026.12.3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방안 연구	27	27		2027.4.3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종료 과제라 하더라도 기관 내부의 검토가 필요하거나, 특정 현안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시기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사항, 또는 연구결과에 기업의 민감한 영업 정보가 포함되어 외부 공개 시 해당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연구결과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하고 있다는 의견임.

□ 그러나 연구결과는 공개가 원칙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도 연구결과 대부분을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오히려 실태조사 성격이 짙은 연구과제는 공개함으로써 공공의 연구 결과물을 개방하고, 연구에 제도개선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여 국가 규제 방향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규제에 수반하는 부작용을 사전에 진단하는 것이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봄.

3. 상용임금 집행계획 수립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상용임금(110-03)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 7. 20.)’에 따른 무기계약직 근로자 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를 말함.⁷⁾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에서 약 9억 1,469만원의 상용임금을 편성하는 등 2024회계연도에 총 11개 세 부사업에서 약 15억7,400만원의 상용임금을 편성하여 13억 3,700 만원을 집행하고 2억 3,600만원을 불용함.

7)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4.1., p.50

〈2024회계연도 상용임금(110-03)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 도 이월 액	이· 전용 등	예비 비	예산 현액	집행 액	차년 도 이월 액	불용 액	
	본 예산	추경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915	915	-	△1	-	914	756	-	158	879
공정거래지원 -공정거래 정책 알리기	138	138	-	△9	-	129	128	-	1	142
심판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37	37	-	-	-	37	32	-	4	38
전산운영경비	72	72	-	-	-	72	53	-	19	75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42	42	-	-	-	42	34	-	8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	29	29	-	-	-	29	29	-	-	30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33	33	-	-	-	33	30	-	3	33
소비자종합 지원시스템 운영	229	229	-	-	-	229	198	-	31	236
카르텔조사국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46	46	-	-	-	46	36	-	10	47
가업집단감사국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29	29	-	1	-	30	30	-	-	30
부산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13	13	-	-	-	13	11	-	2	14
합계	1,583	1,583	-	△9	-	1,574	1,337	-	236	1,52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의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이라 함)에서는 상용임금은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하여야 하고, 연도 중 인력증원, 별도 수당 신설, 단가인상 등이 불가피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건비 부족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2월까지 기관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 기관별 집행계획에는 사업별·직종별 정원과 현원 및 예산 현황 등을 반영한 정원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용임금 집행을 위한 별도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 임금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사용자인 국가가 지급의무를 지는 경직성 경비에 해당하므로 적정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다른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 상용임금 집행계획의 주요 목적이 연도 중 인건비 부족소요가 발생하지 아니하기 위함이라는 점, 집행지침은 모든 행정부처가 준수하여야 할 예산 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상용임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8) p.51

4. 국외여비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2024회계연도에 예산현액 3억 9,900만원 중 3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을 불용함.
- ☐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은 진입규제,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등의 개선과 경제분석 및 경쟁영향평가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24회계연도에 예산현액 9억 9,200만원 중 9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9,100만원을 불용함.
- ☐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은 시장 감시를 통한 경쟁제한적 거래 행태의 시정과 왜곡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과 ICT분야에서의 경쟁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4회계연도에 예산현액 33억 2,600만원 중 17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8,800만원을 불용함.
- ☐ “카르텔 환경개선”은 카르텔 발생의 예방, 적발 및 시장, 입찰질서의 공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24회계연도에 예산현액 3억 8,800만원 중 3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을 불용함.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등 관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 도 이월 액	이· 전용 등	예비 비	예산 현액	집행 액	차년 도 이월 액	불용 액	
	본 예산	추경								
경쟁정책국 비총액 인건비성 기본경비	371	371	-	28	-	399	378	-	21	376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992					992	901		91	629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3,320	3,320	9	△3	-	3,326	1,738	-	1,588	3,470
카르텔 환경개선	391	391	-	△3	-	388	373	-	15	84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경쟁당국과의 교류, 국제회의 참석 등을 목적으로 국외 공무출장을 실시하면서 동일한 목적의 국외 출장을 위하여 사업예산과 기본경비성 예산을 혼합하여 집행함.
- 예를 들어 2024년 6월에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와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사업에서 총 약 5,621만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경쟁주창 관련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와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사업에서 총 약 1,564만원을 집행함.

〈2024회계연도 동일 목적의 국외 출장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출장목적	인원	집행액	출장지 및 기간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3)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1261-340)	OECD 경쟁위원회 오픈데이 및 백투백 워크숍	2명	6,478	프랑스 (2024. 3.)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3)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1251-330)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3)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1251-330)	OECD 경쟁위원회 2024년 6월 정기회의	8명	56,205	프랑스 (2024. 6.)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3) 카르텔환경 개선 (1241-320)	OECD 경쟁위원회 2024년 12월 정기회의	7명	40,616	프랑스 (2024. 12.)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3)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1261-340)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3)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1261-340)	경쟁주창 관련 역량강화 및 제도개선	4명	15,638	스페인 (2024. 1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의제가 여러 정책 분야에 걸쳐 있고, 출장의 목적과 세부사업 간 정책목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국외여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적절한 이·전용 절차 없이 동일한 목적의 국외출장예산을 다른 세부사업에서 각각 집행하는 것은 예산을 사업별로 분리하여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이·전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45조9)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 또한, 행정부가 사업의 성과와 책임을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고, 세출예산을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집행하고 있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러한 집행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국외출장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전용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동일한 세부사업에서 실시하거나, 예산의 규모에 맞게 해당 사업을 축소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외출장에 필요한 국외업무여비 예산의 집행을 철저히 함으로써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9)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5.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¹⁰⁾: 국회 결산 및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반영한 예산 편성·집행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은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과 하도급분야의 거래행태 개선을 위하여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협약 제도 운영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3억 2,600만원 중 20억 9,4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	2,326	2,326	-	-	-	2,326	2,094	-	232	1,718
하도급분야 거래행태 개선	1,652	1,652	-	-	-	1,652	1,473	-	182	1,55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추진	574	574	-	-	-	574	524	-	50	62
공시위탁운영	100	100	-	-	-	100	100	-	-	10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0) 세부사업: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1331-400)

2) 검토의견

- 동 세부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인 ‘하도급분야 거래행태 개선’에서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¹¹⁾에 따른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199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의 기획·총괄, 수탁사업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표본 추출 및 조사대상자 선정 등과 같은 실무업무¹²⁾는 통계조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음¹³⁾.

〈연도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조사대상 업체 변동추이〉

(단위: 천 개)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조사 업체수	100	60	6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4	100	100	1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하도급거래 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12) 표본추출 및 조사대상자 선정, 응답 지원을 위한 활동, 관련시스템 운영 지원, 교육·상담 활동 및 결과 분석·도출, 결과보고서 작성 등

13) 2020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의 실무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2021년부터 현재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 2024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는 당초 일반용역비(210-14목)로 9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반연구비(260-01목)로 전용하여 8억 1,741만원을 집행하였고¹⁴⁾ 1억 6,359만원을 불용하였음.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사업을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감사원의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지적¹⁵⁾에 따른 것인데,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임.

○ 감사원은 기존에 일반용역비로 편성하여 집행해왔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사업에 대하여 지식기반의 조사 용역에 해당하므로 일반연구비¹⁶⁾로 편성·집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2024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이후 감사원의 지적

14) 계약금액: 8억 1,576만원, 부대비용(심사위원 수당): 165만원

15)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기간: 2023. 3. 6. ~ 4. 7. / 감사원의 지적사항 통보일: 2023. 6. 2.

16)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60, 186

1-12. 일반용역비(210-14목)

가. 적용범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은 일반연구비(260-01목)로 집행

6-1. 일반연구비(260-01목)

가. 적용범위

- 국가로부터 기술, 전산,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기술용역, 전산용역, 임상연구용역: (생략)
 - 기타 연구용역: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 일상적인 조사·연구 관련 제반 용역

나. 세부지침

- 분야별 용역은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한다.
 - 기술용역, 전산용역, 임상연구용역: (생략)
 - 기타 연구용역: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사항이 통보되었다고는 하나, 기획재정부의 심의과정이나 국회의 심사과정¹⁷⁾에서 수정할 기회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반연구비로 변경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¹⁸⁾.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동 사업의 예산을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¹⁹⁾, 2024년에는 일반연구비에 맞춰 예정가격을 재산출하였는데²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이 불용되었음.

〈연도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예산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분	편성내역		집행내역		비고
	예산비목	편성액	예산비목	집행액	
2021년	일반용역비 (210-14)	980,000	일반용역비	979,000	
2022년		980,000	(210-14)	979,000	
2023년		980,000	일반연구비	957,135	전용
2024년		981,000	(260-01)	817,410	전용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더욱이 2020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지식기반 조사·연구 성격의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일반연구비로 집행하도록 국회의 지적²¹⁾이

17) 정부위원회의 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일반연구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p.54).

18) 2025년 예산에서는 일반연구비로 편성함.

19) 2023년 전용일: 2023. 6. 14.

2024년 전용일: 2024. 3. 28.

20)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에 포함된 내용 중 홍보 관련 비용(실태조사 관련 콘텐츠 제작 등)을 반영할 수 없어서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21) 2021. 12. 2. 본회의 의결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기반 조사·연구 성격의 실태조사 연구 용역은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하고, 정책개발 성격의 연구용역은 정책연구비(260-02)로 집행할 것

* 당시 배달앱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2건을 일반용역비로 집행하였음.

있었던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는 가맹·유통·대리점분야 실태조사도 일반연구비로 집행되고 있는 점²²⁾을 감안하면, 감사원의 지적 이전에도 동 사업의 예산 비목을 시정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을 적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 비목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2)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1331-401)

6.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²³⁾: 공정거래협약 참여 확대 및 방안 마련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은 가맹·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행태 개선, 대리점분야 환경개선, 해외상생협력 사례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9억 8,700만원 중 9억 7,800만원이 집행되고 9백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987	987	-	-	987	978	-	9	1,501
가맹·유통·대 리점분야 거래행태 개선	678	678	-	-	678	672	-	6	1,192
대리점분야 환경개선	305	305	-	-	305	303	-	2	305
해외상생협력 사례조사	4	4	-	-	4	4	-	-	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3) 세부사업: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1331-401)

2) 검토의견

(1)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비지수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가맹·유통·대리점분야 거래행태 개선’에서는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지원하고 있음.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 중인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대·중견
기업과 중소기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협약이라는 형식으로 1년 단위로 사전에 약정·이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
로서, 2007년 하도급분야²⁴⁾에 처음 도입된 이래로 유통, 가맹, 대
리점 분야에 차례대로 도입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음²⁵⁾.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
으로, 기업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해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이행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협약 내용의 지속적인 이행과 자율적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결과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반영²⁶⁾되므로, 동반성장

24) 참고로, 하도급분야는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1331-400)’ 사업에서 집행함.

25) 근거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26)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50:50으로 합산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결정·공표함.

* 동반성장지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지수 평가대상기업²⁷⁾(이하 “지수기업”이라 한다)은 공정거래협약의 체결부터 이행평가까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동반성장지수 대상이 아닌 기업(이하 “비지수기업”이라 한다)은 자발적으로 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만 이행평가의 대상이 됨.

□ 2024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실적을 살펴보면, 협약체결 실적 대비 협약이행평가 실적은 85.7%로, 전년도 62.5%에 비하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임.

〈연도별 협약체결 및 협약평가 실적〉

(단위: 개, '24.12월 기준)

구분	협약체결 실적					협약평가 실적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	2021	2022	2023	2024
가맹분야	17	17	17	16	14	12	13	11	10	12
유통분야	27	26	25	26	26	24	24	25	25	24
대리점분야	9	10	11	11	14	-	8	10	10	8

※ 대리점분야 공정거래 협약제도는 2019. 7. 도입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하지만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참여가 의무인 지수기업을 제외한 비지수기업의 참여만 살펴보면, 협약체결 실적은 줄어들었고 최근 3년 동안 이행평가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가맹분야 협약체결 및 협약평가 실적〉

(단위: 개, '24.12월 기준)

구분	협약체결 실적					협약평가 실적				
	2020	2021	2022	2023	2024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수기업	11	11	11	10	12	10	11	11	10	12
비지수기업	6	6	6	6	2	2	2	-	-	-
합계	17	17	17	16	14	12	13	11	10	1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7)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매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함.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약체결기업 중 이행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은 모두 비지수기업으로, 비지수기업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고 평가자료 작성, 평가준비를 위한 인력·비용 부담 및 평가결과에 대한 불확실성²⁸⁾ 등으로 평가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런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가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주요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이행평가 실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협약 확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 본연의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비지수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²⁹⁾.

- 특히,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 참여 저조 원인 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³⁰⁾, 현재 제공 중인 각 인센티브의 유인 효과에 대한 검토도

28) 협약이행평가를 받아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높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29)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지수기업인 중소·중견기업의 이행평가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에 적합한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힘.

2024년 12월 가맹분야 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 정보공개서 표지에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양호’ 등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협약 이행 평가에 관심있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제공, 2026년 평가부터 반영

30) 가맹분야의 경우, 서면실태조사나 별도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대하여 조사한 바 없음. 참고로 2024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공급업자의 비율은 54.9%였음.

- 참여의향은 있으나 고민 중인 사유는 담당인력 및 비용 문제 67.2%, 협약제도 이해부족 46.3%, 인센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공정거래협약 확산 활동 내역〉

(단위: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가맹분야	평가기준 설명회	1	1	1
하도급분야	평가기준 설명회	1	1	1
	실무자 간담회	2	1	1
유통분야	평가기준 설명회	1	1	1
	실무자 간담회	-	-	1
대리점분야	평가기준 설명회	1	1	1
	협약제도 설명회	-	1	1
분야 통합	모범사례발표회	1	1	1
	맞춤형 컨설팅	25	34	35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분야 협약이행 인센티브 제공기준〉

(’24. 12월 기준)

평가등급	평가점수	인센티브 제공내용
최우수	95점 이상	- 가맹사업법 제32조의3 제2항에 의한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조사 면제라 함은 당해 기업을 조사 대상에 미포함 하는 것을 의미, 이하 동일) -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의무 면제(1년, 1회) - 법인·개인 대상 위원장 이상 표창 수여 - 표준정보공개서 표지에 2년간 표시
우수	90점 이상	- 가맹사업법 제32조의3 제2항에 의한 직권조사 1년간 면제 -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의무 면제(1년, 1회) -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 표준정보공개서 표지에 2년간 표시
양호	85점 이상	-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시, 공표 크기 및 매체수 1단계 하향 조정 및 공표기간 단축(1년, 1회) -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 표준정보공개서 표지에 1년간 표시³¹⁾

티브 부족 26.9% 순이었고,

- 참여의향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사유는 담당인력 및 비용 문제 42.8%, 협약제도 이해부족 35.9%, 인센티브 부족 13.8%, 번거로움 13.5%순임.

31) 당초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정보공개서 표지에 표시할 수 있었으나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개정으로 양호 이상 등급으로 확대되었음.

(2) 유통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개선을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2024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양호 이상을 받은 기업 비중이 유통분야에서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통분야에서 양호 이상을 받은 기업의 수는 8개로 전체의 33.3%에 불과하였는데, 가맹분야가 83.3%, 대리점분야가 62.5%, 하도급분야가 51.9%인 것을 고려하면, 유통분야의 이행평가 결과가 현저히 저조한 측면이 있음.

〈유통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단위: 개)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유통분야	최우수	0	2	3	1	4
	우수	2	2	2	3	2
	양호	5	3	2	1	2
	등급외	17	17	18	19	16
가맹분야	최우수	5	9	6	6	7
	우수	5	2	5	4	3
	양호	2	1	0	0	0
	등급외	0	1	0	0	2
대리점분야	최우수	-	1	1	1	1
	우수		1	1	3	3
	양호		0	3	1	1
	등급외		6	5	6	3
하도급분야	최우수	69	63	65	72	72
	우수	14	26	25	22	18
	양호	20	13	18	16	18
	등급외	65	80	89	88	1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는 세부 평가 대상의 수가 많고 각 평가대상이 촘촘한 기준에 따라 다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행평가의 고득점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임.

- 유통 분야는 3가지 평가 항목(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상생 협력 지원)에 대해 13개 세부평가 항목, 30개(업태별 차이 존재) 평가요소로 점수를 산정하고 있어 하도급분야나 대리점분야에 비해 세부평가 대상의 수가 많은 점³²⁾, 준수 정도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점³³⁾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타 분야에 비해 고득점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임³⁴⁾.

□ 그런데 유통분야의 공정거래협약 대상 기업은 대규모유통업자³⁵⁾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수기업에 해당하여 매년 이행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외 평가를 받는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형태가 지속되는 것³⁶⁾은 실질적으로 협약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³⁷⁾, 이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또는 매장임차인) 사이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2) 하도급분야: 12개 세부평가 항목, 23개 평가 요소, 대리점분야: 11개 세부평가 항목, 23개 평가 요소

33) 가맹 분야(24개 세부평가 항목, 58개 평가요소)는 유통 분야보다 평가 요소는 많으나, 대체로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함.

34) 실제로 가맹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유통분야에서는 등급외 평가를 받은 경우도 있음.

35)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①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②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36) 2020년 70.8%, 2021년 70.8%, 2022년 72%, 2023년 79.2%, 2024년 66.7%

37) 2024년 등급외 평가를 받은 17개 기업 중 신규로 평가받은 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3번 이상 등급외 평가를 받음(2020~2024년 기준).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가 저조한 원인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여 참여 기업의 협약 이행 결과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공정거래지원³⁸⁾: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공정거래지원’은 공정거래정책 알리기,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청년인턴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3억 9,000만원 중 12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9,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공정거래지원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정거래지원	1,389	1,389	-	1	-	1,390	1,298	-	92	1,157
공정거래정책 알리기	543	543	-	13 △9	-	547	546	-	1	548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159	159	-	3 △2	-	160	154	-	6	158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356	356	-	-	-	356	299	-	57	116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등 대학생대상 홍보·교육사업	71	71	-	-	-	71	69	-	2	71
청년인턴 운영	260	260	-	△4	-	256	230	-	26	26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38) 세부사업: 공정거래지원(7031-300)

2) 검토의견

- 동 세부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인 ‘조사공무원 역량강화’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사건 조사 품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력별·부서별 맞춤형 조사 교육을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2024년 신설되었음.
- ‘조사공무원 역량강화’의 2024회계연도 예산액은 총 3억 5,600만원으로, 전문교육 운영에 1억 500만원, 역량강화 교육컨텐츠 제작에 2억 4,000만원, 관련 출장 국내여비로 1,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2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내역	예산액	집행액
전문교육 운영(일반수용비, 210-01)	1억 500만원	9,700만원
교육컨텐츠 제작(일반용역비, 210-14)	2억 4,000만원	1억 9,400만원
교육출장, 기타 업무협의 출장(국내여비, 220-01)	1,100만원	800만원
합계	3억 5,600만원	2억 9,900만원

-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내부전문가 교육과 외부전문가 교육을 입문-실무-심화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온라인 교육을 위한 자체 콘텐츠 8개 과목을 제작하였음.

〈2024회계연도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교육 내용	비 고
내부전문가 교육	조사절차규칙, 진술조사 요령, 보고서 작성법, 포렌식 기법·자료탐색 요령, 현장조사 요령 등에 대해 강의 및 조사 실습	총 9회 실시 (본부 4회, 지방사무소 5회)
외부전문가 교육	인지면담 분야 및 수사 기법 등에 대한 강의와 실습 병행	총 16회 실시
온라인 교육	조사절차규칙 등 8개 과목을 강의형과 인터랙티브 드라마형으로 제작하여 나라배움터에 과정 개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런데 외부전문가 교육은 사업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풀 구성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음.

○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전문가 교육을 ① 인지면담 과정과 ② 주요 산업별 전문가 초청 강의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신생 산업 분야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산업 분야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이해 향상을 위해 계획하였던 ‘주요 산업별 전문가 초청 강의’는 강사 섭외 문제³⁹⁾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이 인지면담 관련 내용으로 대부분 채워지게 되었음.

39) 공정거래위원회는 AI·플랫폼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섭외하고자 하였으나, 일정·보수·기타 문제로 강의 편성이 곤란하여 추진하지 못함.

〈2024년도 외부전문가 교육 과정 내용〉

	입문과정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1교시	수사심리학 조사기법	BIG5 요인 검사	갈등 관리	조사프로세스 단계별 이해
2교시	질문 유형별 특성	성격별 피조사자 반응	갈등상황별 적합모드 실습	조사 협력· 협동 실습
3교시	조사 대화기술	화이트칼라 범죄	협상 전략 프로세스	조사 시나리오 작성· 실습
4교시	사례분석 실습	공정거래 사건의 심리적 특성	협상관리 역량의 이해와 실습	조직내 의사소통 기법
				질문 유의사항

	실무과정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1교시	인지면담 사례분석	집단지성의 활용	설득의 심리·기법	진위판단 기법
2교시	인지면담 실습	수사기법과 절차	면담계획 수립 실습	사례분석
3교시	진술조사와 수사심리기법	의사소통의 기술	라포형성 기법	성격프로파일링
4교시	인지면담 프로토콜	의사소통 분석·실습	진술조사 도입 실습	싸이코패스 분석

	심화과정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1교시	인지 면담 기법	진술 조사 전략	심리 협상	진위판단 기법
2교시	인지 면담 실습	SUE 기법·실습	설득기법	진술·신문조서 분석 실습
3교시	진술 조사 기법	집단지성 활용	협상· 설득 실습	성격이론
4교시	인지면담 프로토콜	경찰 수사 기법·절차	사건·수사 사례 분석	싸이코패스 분석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또한, ‘인지면담 과정’은 진술분석가, 심리분석가, 수사팀장 등 관련 전문가·실무자를 활용하여 인지면담 분야 및 수사 기법 등에 대해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여 교육하였는데, 일부 강사에게 수업이 집중된 측면이 있음.

〈2024년도 외부전문가 강사로 지급 현황〉

(단위: 천원)

수령인	담당 분야	강의횟수	집행액	비고
○○○	인지면담, 진술분석	70	26,706	
○○○	의사소통, 인지면담	55	24,640	
○○○	성격·범죄유형분석	51	21,404	
○○○	경찰 수사절차, 기법	26	8,104	
○○○	수사지휘, 수사기법	14	3,152	
○○○	경제범죄학	8	3,074	
○○○	조직·리더십	7	2,594	
○○○	진술분석	6	1,714	
○○○	진술분석	6	1,614	
○○○	경제범죄학	4	1,556	
○○○	실습 보조	7	1,028	
○○○	실습 보조	7	712	
○○○	실습 보조	5	476	
○○○	실습 보조	4	354	
14명		270회	97,12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면담 분야 과목 특성상 과목 간 연속성이 존재하고, 강사 섭외 등 실무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강사가 여러 과목을 강의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음.

□ 그런데 강사 섭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외부전문가 교육 과정이 일부 강사에게 편중되어 실시되고, 교육 시기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일부 과목은 추진되지 못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 준비 단계에서 관련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2024년도 외부전문가 교육 운영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본부	입문	-	-	-	-	-	-	-	-	-	-	3회	2회
	실무	-	-	-	-	-	-	-	-	-	2회	4회	2회
	심화	-	-	-	-	-	-	-	-	-	-	1회	-
지방 사무소	입문	-	-	-	-	-	-	-	-	-	-	-	1회
	실무	-	-	-	-	-	-	-	-	-	-	-	1회
	심화	-	-	-	-	-	-	-	-	-	-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시정조치 등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동 사업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과 충분한 전문가 풀 구성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8. 선진소비자정책 추진⁴⁰⁾: 평가의 투명성 제고 및 불용 최소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선진소비자정책 추진”은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날 행사 개최, 소비자정책 연구용역,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운영, SNS 부당광고 상시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회계연도 예산 현액 13억 8,900만원 중 13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5,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1,389	1,389	-	-	1,389	1,336	-	53	1,792
소비자의날 행사	43	43	-	-	43	43	-	-	83
소비자정책 종합세미나	11	11	-	-	11	11	-	-	11
소비자정책사업운영 지원	40	40	-	-	40	37	-	3	41
특수전자거래대상개선	40	40	-	-	40	40	-	-	40
소비자중심경영활성화	150	150	-	-	150	150	-	-	150
소비자정책연구용역	160	160	-	-	160	154	-	6	40
표준약관 교육	11	11	-	-	11	11	-	-	11
소비자정책위원회운영	29	29	-	-	29	25	-	4	29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181	181	-	-	181	161	-	20	181
전자상거래분야 거래환경 개선	50	50	-	-	50	47	-	3	50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100	100	-	-	100	92	-	8	-
중점 대응과제 직권조사	61	61	-	-	61	60	-	1	61
광고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	25	25	-	-	25	25	-	-	25

40) 세부사업: 선진소비자정책 추진(1431-600)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비자 법집행 감시요원 운영	40	40	-	-	40	40	-	-	40
SNS 부당광고상시 모니터링	189	189	-	-	189	189	-	-	189
소비자 위해제품 감시 및 시정	56	56	-	-	56	51	-	5	56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154	154	-	-	154	153	-	1	76
소비자관련 법률교육 콘텐츠 제작	40	40	-	-	40	38	-	2	40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9	9	-	-	9	9	-	-	9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	-	-	-	-	-	-	-	66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1) 소비자정책 추진 실적 평가 결과 전체 공개를 통한 평가의 투명성 제고

□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는 「소비자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⁴¹⁾에 따라 각 부처·지자체가 매년 수립하는 ‘연

41) 「소비자기본법」 제2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도별시행계획(이하 “시·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 및 시·도별시행계획을 취합·조정하여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이나

도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 사례에 대해 포상하는 등 소비자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사업임.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 1억 8,100만원 중 1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 실적 평가	181	161	-	-	181	161	-	20
· 일반수용비(210-01)	88	88	-	-	88	88	-	-
· 임차료(210-07)	-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40	40	-	-	40	20	-	20
· 사업추진비(240-01)	3	3	-	-	3	3	-	-
· 포상금 (310-03)	50	50	-	-	50	50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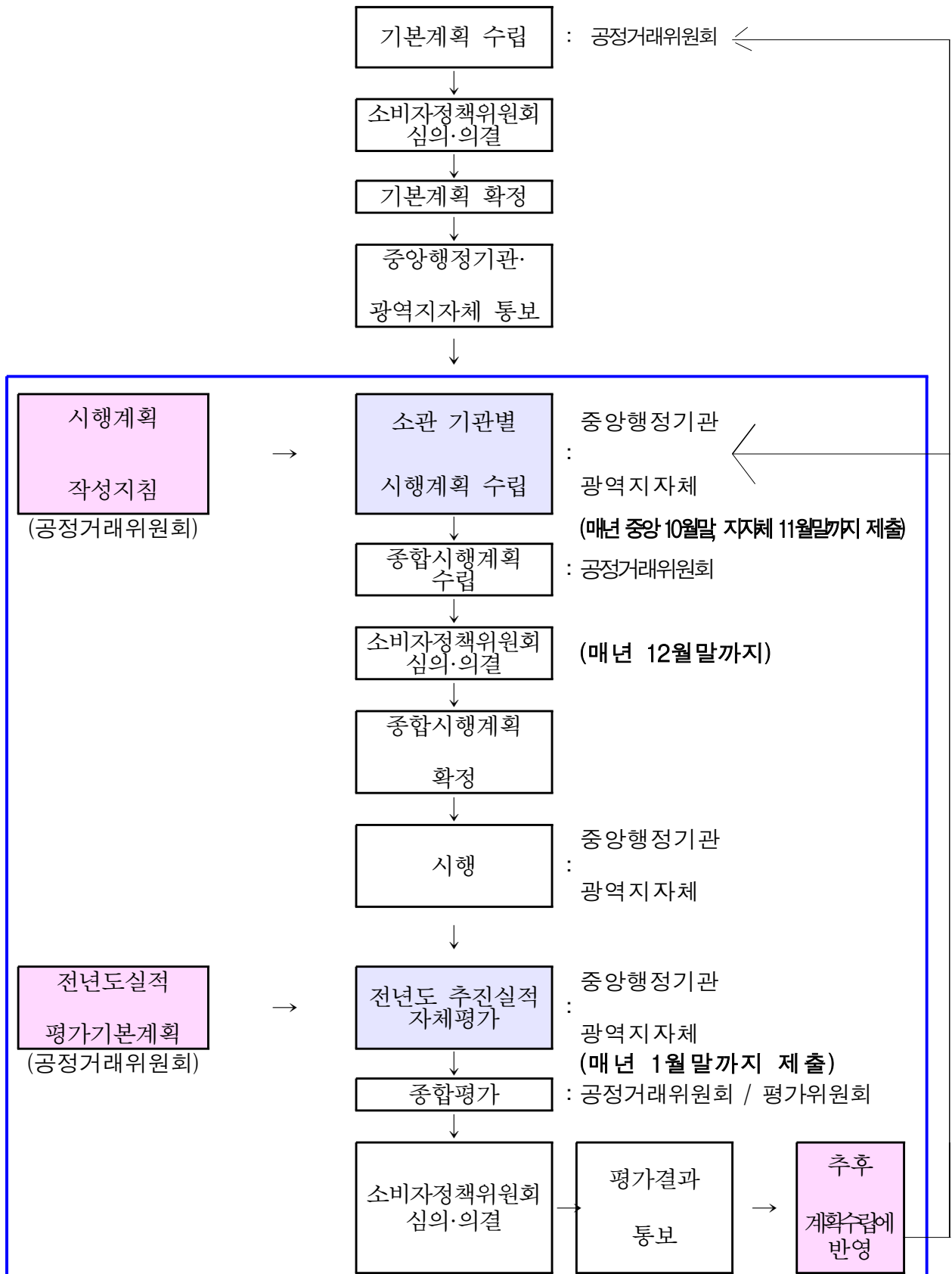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마다 소비자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에서 제출한 시행계획을 취합·조정하여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및 평가하고 있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도별시행계획(이하 “시·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난해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나 시·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결과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절차〉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위원회’⁴²⁾와 6개 분과의 ‘전문평가단’⁴³⁾을 구성하여, 18개 중앙행정기관⁴⁴⁾ 및 17개 광역지자체가 제출한 267개 과제에 대해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 ~ 2023)」에 따른 202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을 2024년에 평가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공표한 바 있음.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대상 과제〉

(단위: 개)

기관	5대 정책목표	17개 중점과제	합계
중앙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35) 【1분과】	▪ 온라인 플랫폼 등 비대면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6)	120
		▪ 소비자 데이터 주권 강화(6)	
		▪ 소비자거래 시장 개선 및 법 집행 강화(9)	
		▪ 금융·디지털 등 취약 시장 분석 및 개선(7)	
	디지털 전환기 소비자역량 제고(31) 【2분과】	▪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문화 확산(7)	
		▪ 소비자교육 체계화 및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13)	
		▪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7)	
	국민체감 소비생활 안전 확보(26) 【3분과】	▪ 지속가능한 소비생태계 구축(11)	
		▪ 소비생활 안전 취약 분야 대응 강화(14)	
		▪ 소비자위해 감시 및 대응·협력 강화(4)	
		▪ 소비자안전 정보 공유를 통한 안전 기반 마련(8)	

42) 평가위원회는 평가절차와 일정을 총괄하고 평가 결과를 검토 및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위원장, 전문평가단장, 각 분과위원장, 정부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됨.

43) 전문평가단은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구성 체계를 반영하여 6개 분과 총 31명(평가단장 포함, 각 분과별 5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됨.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과제별 자체평가보고서(추진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전문평가단이 서면평가를 실시함.

44) 13부·1처·4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기관	5대 정책목표	17개 중점과제	합계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12) 【4분과】	▪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 및 비대면 분쟁 해결 활성화(4)	
		▪ 분쟁해결의 전문성·실효성 강화(3)	
		▪ 소비자피해 조기대응 및 집단 분쟁 대응 강화(5)	
	과학적·협력적 소비자정책 추진 및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16) 【5분과】	▪ 과학적·협력적 소비자 정책 추진(6)	
		▪ 소비자 지향적 법제 정비(2)	
		▪ 글로벌 대응·협력 강화(8)	
지방	광역자치단체 【6분과】	▪ 5개 정책목표별, 총 147개 과제 [기본과제 147, 대표과제 17(기본과제 중 지역 특성 과제)]	14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에 실시한 2023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점수는 80.6점으로 120개 과제 중 66개(55%) 과제가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았음.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중앙)〉

연도	평균 점수	평가등급					
		합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21	80.3점	128개	10개(7.8%)	52개(40.6%)	52개(40.6%)	14개(10.9%)	-
2022	80.5점	119개	10개(8.4%)	59개(49.6%)	42개(35.3%)	7개(5.9%)	1개(0.8%)
2023	80.6점	120개	10개(8.3%)	56개(46.7%)	51개(42.5%)	3개(2.5%)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지방의 경우 대표과제 및 기본과제의 평균점수는 각각 76.0점 및 78.0점으로 대표과제는 17개 중 7개(41.2%)가, 기본과제는 147개 중 75개(51.1%)가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았음.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지방)〉

구분	연도	평균 점수	평가등급					
			합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대표 과제	2021	74.0점	17개	2개(11.8%)	4개(23.5%)	6개(35.3%)	3개(17.6%)	2개(11.8%)
	2022	77.6점	17개	2개(11.8%)	6개(35.3%)	5개(29.4%)	3개(17.6%)	1개(5.9%)
	2023	76.0점	17개	2개(11.8%)	5개(29.4%)	7개(35.3%)	3개(17.6%)	-
기본 과제	2021	70.6점	147개	5개(3.4%)	41개(27.9%)	37개(25.2%)	44개(29.9%)	20개(13.6%)
	2022	80.1점	150개	26개(17.3%)	79개(52.7%)	24개(16.0%)	13개(8.7%)	8개(5.3%)
	2023	78.0점	147개	38개(25.9%)	37개(25.2%)	46개(31.3%)	19개(12.9%)	7개(4.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기관에서 총 12개 과제가 “매우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고 이를 공개하고 있음.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우수 사례〉

(단위: 개)

구분	매우 우수 등급
기관	과기정통부(1), 농식품부(2), 환경부(1), 개인정보위(1), 공정위(2), 대구시(1), 전북자치도(1), 한국소비자원(3)
영역	거래(5), 역량(2), 안전(1), 분쟁해결(2), 정책협력(2)
주요특징	- 민·관 협력을 통한 소비자이슈 신속 대응, 기업의 자율개선 유도(환경부·소비자원) - 고령소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비자역량 강화 및 피해

구분	매우 우수 등급
	예방(농식품부·전북자치도·대구시) - 디지털경제 전환에 따른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개인정보 권리 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위·공정위) - 데이터에 기반한 증거기반 정책 수립 등 보다 스마트한 의사결정 지원 (농식품부·소비자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경우 7개 중앙부처에 ‘매우우수’ 과제 1건당 180만원, ‘우수’ 과제 1건당 150만원을 지급하였고, 11개 지자체에는 ‘매우우수’ 과제 1건당 40만원, ‘우수’ 과제 1건당 35만원을 지급하여 총 11개 기관에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음.

〈2024년도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 사업 포상금 지급 내역〉

순번	구분	기관명	포상금 산정	포상금
1	중앙부처	농림축산식품부	(2×180만원)+(3×150만원)	810만원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180만원)+(2×150만원)	480만원
3		환경부	(1×180만원)+(2×150만원)	480만원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80만원)+(1×150만원)	330만원
5		문화체육관광부	(2×150만원)	300만원
6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150만원)	300만원
7		식품의약품안전처	(2×150만원)	300만원
		소계		3,000만원
1	지자체	전라북도	(13×40만원)+(5×35만원)	695만원
2		대구광역시	(10×40만원)+(4×35만원)	540만원
3		경기도	(7×40만원)+(3×35만원)	385만원
4		인천광역시	(6×40만원)+(4×35만원)	380만원
		소계		2,000만원
합계		11개		5,000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한편, 「소비자기본법」 제25조⁴⁵⁾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7조 및 제26조⁴⁶⁾에서도 정부업무평가의 결과 공개를 통한 투명성의 원칙과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장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결과의 일부인 매우 우수사례만을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있어 정부업무평가의 투명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소비자정책의 대상인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45)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 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

2. ~ 5. (생략)

② ~ ⑦ (생략)

46)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며, 정부업무평가 체계 내에서 이루어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7조(정부업무평가의 원칙) ①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정부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따라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정책위원회 홈페이지⁴⁷⁾를 통해 소비자정책 추진 실적 평가결과 뿐만 아니라, 소비자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평가기관의 책임성 및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제도가 아직은 시행 초기⁴⁸⁾임을 고려하여 부처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소비자정책 수립과 집행을 유도하고자 우수 등급 이상의 과제를 공개하고 있으나, 향후 전체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음.

47) <https://www.consumer.go.kr>, 소비자정책위원회 홈페이지를 구축·운영 중에 있으나 동 위원회를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및 각 기관 담당자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하여 위원회 상정안건 등을 공유하고 있음.

48) 2019년부터(제4차 기본계획의 1차년도(2018년) 과제) 정식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시행

(2) 예산의 과다편성 주의 및 집행비목에 맞는 연구용역 실시

-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중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일반용역비(210-14)는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0%임.

<2024회계연도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 실적 평가	181	161	-	-	181	161	-	20
· 일반수용비(210-01)	88	88	-	-	88	88	-	-
· 임차료(210-07)	-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40	40	-	-	40	20	-	20
· 사업추진비(240-01)	3	3	-	-	3	3	-	-
· 포상금 (310-03)	50	50	-	-	50	50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최근 3년간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일반용역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수의계약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 및 체계 개선 방안’(2022),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 컨설팅 용역’(2023),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개선 연구’(2024)를 수행하였는데, 매년 4,000만원 예산 중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데 2,000만원을 집행하였음.

〈최근 3년간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일반용역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잔액	비고
2022	40	40	20	20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 및 체계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2022. 11. ~ 12.)
2023	40	20 ⁴⁹⁾	20	-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 컨설팅 용역(한국소비자원, 2023. 8. ~ 12.)
2024	40	40	20	20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개선연구 (한국소비자원, 2024. 5. ~ 1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
용역비(210-14목)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
행시키는 비용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
련 용역은 일반연구비(260-01목)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 및 체계 개선 방
안’(2022),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 컨설팅 용역’(2023),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개선 연
구’(2024)은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고 보여짐.

49) 평가위원 수당 부족으로 2,00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세목 조정하여 집행하였음.

□ 또한, 매년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2,000만원으로 2022년 및 2024년에 각각 2,000만원씩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23년의 경우에는 집행잔액 2,00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조정을 통해 집행하였는 바 매년 예산이 과다편성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 수립 및 평가 관련 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예산집행 지침에 맞게 일반용역비(210-14목)가 아닌 일반연구비(260-01목)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한 수준의 예산 편성으로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9. 소비자상담센터 운영⁵⁰⁾: 소비자단체 상담위탁 사업 관리 철저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은 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 36억 2,800만원 중 35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3,628	3,628	-	-	3,628	3,593	-	35	3,628
소비자단체 상담위탁	2,304	2,304	-	-	2,304	2,304	-	0	2,304
유지보수 및 운영위탁	1,144	1,144	-	-	1,144	1,140	-	4	1,144
공공요금	180	180	-	-	180	149	-	31	18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50) 세부사업: 소비자상담센터 운영(1451-620)

2) 검토의견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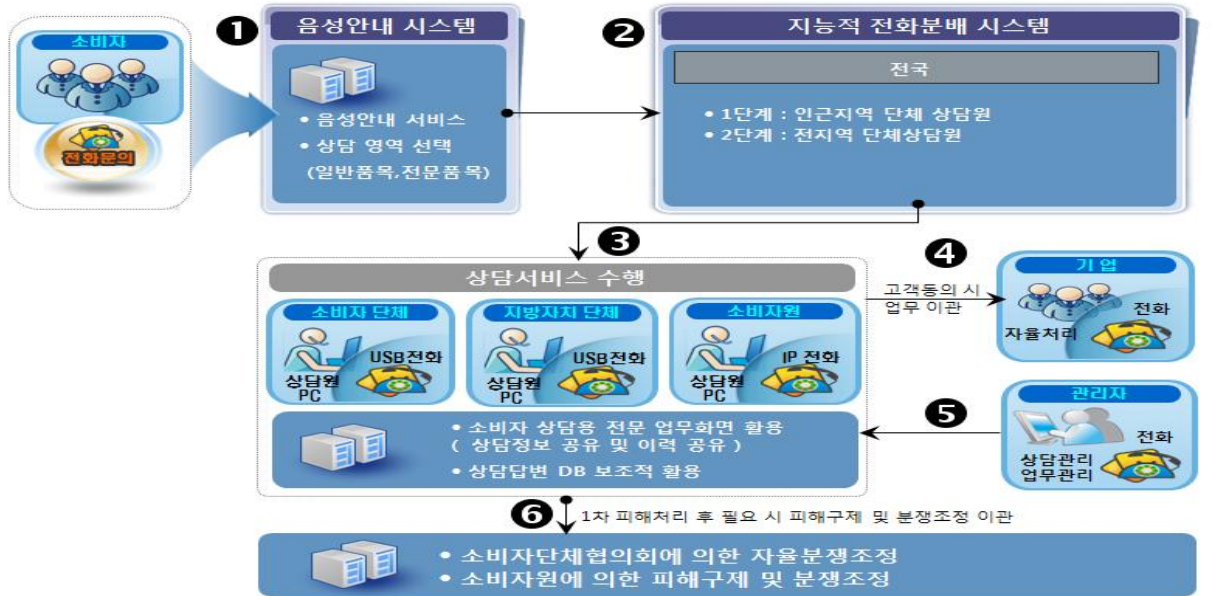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상담이 필요한 소비자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영역을 선택하면 인근지역 상담기관에 배정함으로써 상담과 피해구제를 진행하게 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세부사업을 통해 소비자단체의 상담업무 수행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⁵¹⁾.

51)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위탁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각 소비자단체의 월별 상담건수를 취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업무 흐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최근 5년간 소비자단체의 일반상담 건수와 피해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일반상담과 피해처리 실적이 감소하다 2023년부터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일반상담 실적은 28만 3,560건으로 2023년 25만 2,091건 대비 3만 1,469건(12.5%) 크게 증가하였고, 피해처리 실적은 12만 6,447건으로 2023년 11만 3,661건 대비 1만 2,836건(11.3%) 증가하여 각각 2024년 계획을 초과하였음.

○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의 경우 7월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지급 및 정산 지연 사태 발생 후 소비자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설명함.

〈최근 5년간 일반상담 건수 계획 대비 실적〉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일반상담 건수 계획(A)	430,000	450,000	350,000	320,000	252,000
일반상담 건수 실적(B)	305,830	290,440	235,301	252,091	283,560
차이(A-B)	124,170	159,560	114,699	67,909	△31,56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5년간 피해처리 건수 계획 대비 실적〉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피해처리 건수 계획(A)	98,000	120,000	120,000	115,000	120,750
피해처리 건수 실적(B)	107,061	102,085	100,466	113,661	126,447
차이(A-B)	△9,061	17,915	19,534	1,339	△5,69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한편, 소비자단체 상담위탁 2024년 예산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실적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일반상담건수 계획은 25만 2,000건, 피해처리건수 계획은 12만 750건으로 산정하였음.

〈2024년도 소비자단체 상담위탁 예산 산출내역〉

- 합 계: 2,304백만원
- 가. 상담위탁: 2,100백만원
 - 정보제공(일반상담) 수당 및 데이터 수집: 252,000건*4,500원=1,134백만원
 - 피해처리 수당: 120,750건*8,000원=966백만원
- 나. 관리자 인건비: 120백만원

- 상담관리자 인건비 1,000,000원*10명*12월=120백만원

다. 상담원 교육: 34백만원

- 상담원 온라인 교육: 1,000,000원×8회= 8백만원

- 상담원 집합 교육: 5개지역×5,200,000×1회= 26백만원

라. 상담원 카운슬링: 50백만원

- 상담원 집단 카운슬링: 19,000,000×2회= 38백만원

- 상담원 개별 카운슬링: 6,000,000×2회= 12백만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나 앞서 살펴본 실적은 각각 28만 3,560건, 12만 6,447건으로 계획 대비 3만 1,560건, 5,697건을 초과함에 따라 예산이 부족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에 소비자단체가 진행한 일부 상담 및 피해처리 수당을 정산하지 못하고, 2025년 1월에 2025년 예산으로 미지급분 1억 7,200만원을 지급하였음.

〈2024회계연도 소비단체 상담위탁 용역비 지급내역〉

(단위: 원)

지급일	건명	지급액	수령인명
2024.02.26.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비용(2024년 1월분)	209,603,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4.03.28.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비용(2024년 2월분)	171,584,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4.04.23.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비용(2024년 3월분)	169,895,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4.05.23.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비용(2024년 4월분)	172,889,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4.06.27.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비용(2024년 5월분)	179,727,5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4.07.2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비용(2024년 6월분)	171,606,5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4.08.29.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비용(2024년 7월분)	236,470,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4.09.27.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비용(2024년 8월분)	226,926,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4.10.2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비용(2024년 9월분)	194,363,5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4.11.25.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비용(2024년 10월분)	218,884,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4.12.24.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비용(2024년 11월분)	215,354,5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4.12.26.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비용(2024년 12월 첫째주분)	52,697,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지급일	건명	지급액	수령인명
	소 계	2,220,000,000 ⁵²⁾	
2025.01.15.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비용(2024년 12월 미지급분)	171,809,0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합 계	2,391,809,0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 재구성)

□ 2024년에 수행한 사업비 부족분을 2025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상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2025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2025년 예산은 22억 3백만원으로 2025년 7월 기준 15억 2,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69.2%임.

〈2025년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및 피해처리 건수 실적 및 수당 집행 현황〉

(2025. 7. 31. 기준,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편성(A)	집행(B)	집행율(B/A)
건수	일반상담	246,240	157,006	63.8
	피해처리	111,490	73,296	65.7
예산		2,203	1,525	69.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따라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 및 피해처리 건수의 추이를 분석하여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연내 미지급 및 차년도 예산을 활용한 사후 정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52) 관리자 인건비 1억 2,000만원 포함된 금액임.

(2) 수의계약 법적근거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상담위탁비로 편성된 2024년도 일반용역비(210-14) 예산 23억 4백만원을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수의계약을 통해 전액 집행하였음.

유지보수 및 운영위탁비로 편성된 2024년 관리용역비(210-15) 예산 11억 4,400만원 중 11억 4천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중 공개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유찰 후 단독 응찰한 (주)오파스넷과 관리용역 계약을 통해 8억 5,500만원을 전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집행하였고, 2억 8,500만원을 한국소비자원과 수의계약을 통해 전산·정보시스템 운영비로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소비자상담 및 소비자상담센터 위탁운영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계약방식	계약자 및 계약기간	비고 (수의계약 근거)
소비자단체 상담위탁		2,304	2,304	-			
- 상담위탁	일반용역 210-14	2,304	2,304	-	수의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25.1.1~2025.12.31)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제3조 등
유지보수 및 운영위탁		1,144	1,140	4			
- 유지보수	관리용역 210-15	859	855	4	수의	(주)오파스넷 (2025.1.1~2027.12.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2차례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 운영위탁	관리용역 210-15	285	285	-	수의	한국소비자원 (2025.1.1~2025.12.31)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제3조 등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한편,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일반용역비(210-14)와 관리용역비(20-15) 집행시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 계약,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등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7호)」 제7조제1항⁵³⁾에 따라 소비자단체 상담위탁 및 정보시스템 운영위탁을 각각 (사)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및 한국소비자원과 ‘운영위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앙관서의장이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한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53)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위원회는 소비자상담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른 상담서비스 제공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참여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제4조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참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소비자상담센터의 업무중 일부를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 대상기관의 인력·조직·재정상태·공신력·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따라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전산·정보 시스템 운영사업 수행 시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⁵⁴⁾”의 내역사업 중 소비자정보 위탁운영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의 2⁵⁵⁾ 등에 근거를 두고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고 있음.

54)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1451-621

55) 「소비자기본법」 제16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하여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② ~ ⑥ (생략)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록표지의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업무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4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10. 한국소비자원 출연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소비자원 출연”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제도·정책의 연구, 소비자교육과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4회계연도 한국소비자원의 수입액(수입실적)은 출연금 528억 4,200만원 등 555억원 6,400만원이고, 지출액(집행액)은 인건비 376억 4,200만원, 사업비 127억 2,300만원, 운영비 43억 1,600만원 등 총 546억 8,100만원(집행률 97.2%)임.

〈2024회계연도 한국소비자원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수입실적 (B)	차액 (B-A)	비율 (B/A)
1. 정부출연금	52,842	52,842	52,842	-	100.0
2. 자체수입	3,417	3,417	2,722	△695	79.7
- 전년도이월금	952	952	607	△345	63.8
- 수탁용역수입	1,660	1,660	1,397	△263	84.2
- 교육연수수입	40	40	1	△39	2.5
- 이자수입	164	164	275	111	167.7
- 임대·기타수입	601	601	442	△159	73.5
수 입 합 계	56,259	56,259	55,564	△695	98.8

(자료: 한국소비자원)

〈2024회계연도 한국소비자원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집행 (B)	차액 (A-B)	집행률 (B/A)
1. 인건비	36,559	37,669	37,642	27	99.9
2. 사업비	13,718	13,718	12,723	995	92.7
(항) 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1,299	1,299	994	305	76.5
(세항) 정책연구	500	500	394	106	78.8
(세항) 거래조사	540	540	433	107	80.2
(세항) 대외협력	259	259	167	92	64.5
(항) 소비자역량강화 및 정보제공	3,237	3,149	3,052	97	96.9
(세항) 소비자 정보제공	413	395	386	9	97.7
(세항) 소비자 역량강화	135	135	106	29	78.5
(세항) 소비자원 정보화	2,553	2,483	2,448	35	98.6
(세항) 소비자홍보	136	136	112	24	82.4
(항) 소비자안전 및 시험검사	5,982	5,982	5,649	333	94.4
(세항) 소비자안전	2,576	2,576	2,448	128	95.0
(세항) 시험검사	3,406	3,406	3,201	205	94.0
(항)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1,706	1,794	1,644	150	91.6
(세항) 피해구제	812	846	832	14	98.3
(세항) 분쟁조정위원회	550	604	567	37	93.9
(세항) 지방소비자	345	344	245	99	71.2
(항) 수탁용역	1,494	1,494	1,385	109	92.7
(세항) 수탁용역	1,494	1,494	1,385	109	92.7
3. 운영비	4,631	4,631	4,316	315	93.2
(세항) 경영기획	4,077	4,077	3,785	292	92.8
(세항) 부서운영비	554	554	531	23	95.8
4. 예비비	1,351	241	-	241	0
지출합계	56,259	56,259	54,681	1,578	97.2

(자료: 한국소비자원)

2) 검토의견

(1) 연례적인 수입결손 발생

- 한국소비자원은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공정위로부터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수지차보전기관으로 2024회계연도 수입예산은 정부출연금, 자체수입 등으로 편성되어 있음.
- 2024회계연도 자체수입 계획액은 34억 1,700만원이나 수납액은 27억 2,200만원으로 6억 9,500만원의 수입 결손이 발생하였음.

<2024회계연도 한국소비자원 수입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수입실적 (B)	차액 (B-A)	비율 (B/A)
정부출연금	52,842	52,842	52,842	-	100
자체수입 등	3,417	3,417	2,722	△695	79.7
수 입 합 계	56,259	56,259	55,564	△695	98.8

(자료: 한국소비자원)

- 2024회계연도의 자체수입 결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6억 9,500만원 자체수입 결손의 주된 요인은 전년도이월금 3억 4,500만원, 수탁용역 사업 2억 6,300만원, 기타수입 1억 5,900만원, 교육연수수입 3,900만원 순으로 나타남.

〈2024회계연도 자체수입 결산 세부내역〉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수입실적 (B)	차액 (B-A)	비율 (B/A)
합 계	3,417	3,417	2,722	△695	79.7
- 전년도이월금	952	952	607	△345	63.8
- 수탁용역수입	1,660	1,660	1,397	△263	84.2
- 교육연수수입	40	40	1	△39	2.5
- 이자수입	164	164	275	111	167.7
- 임대·기타수입	601	601	442	△159	73.5

(자료: 한국소비자원)

□ 한편, 「2024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⁵⁶⁾ (22p.) 및 「2024회계연도 수지차보전기관 예산안 작성요령」에 따르면, 수지차보전 기관은 과거 자체수입 실적(직전년도 또는 3개년도 평균 실현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수입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이자수입을 제외한 모든 자체수입에서 결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과거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자체수입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함에 따라 2024년에도 자체수입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56) 「2024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2p.

출연금 및 보조금을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은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을 세부 내역까지 빠짐없이 추계하여 자체수입에 반영

- 과거 자체수입 실적을 감안하여 적정수준 반영

- 전년도이월금 수입은 전년도 수입결손을 제외한 결산잉여금으로 매년 수입결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년도 수납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2023년과 동일하게 2024년에도 9억 5,2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3억 4,500만원의 수입결손이 발생하였음.

〈최근 4년간 전년도이월금 수입 편성 및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A)	1,040	1,040	952	952
실적(B)	676	226	506	607
수납률(B/A)	65.0	21.7	53.2	63.8
수입결손(B-A)	△364	△814	△446	△345

(자료: 한국소비자원)

- 수탁용역수입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정부부처·기관이 의뢰하는 위탁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2023년 수납액이 13억 6,600만원임에도 2024년에 그보다 많은 16억 6,0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2억 6,3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음.

〈최근 4년간 수탁용역수입 편성 및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A)	2,741	2,318	1,660	1,660
실적(B)	1,751	1,333	1,366	1,397
수납률(B/A)	63.9	57.5	82.3	82.2
수입결손(B-A)	△990	△985	△294	△263

(자료: 한국소비자원)

- 기타수입은 청사 임대수입⁵⁷⁾을 비롯한 각종 잡수입으로 전년도 실적
적을 고려하지 않고, 최근 4년간 동일하게 6억 100만원을 편성함⁵⁸⁾
으로써 2024년에 1억 5,900만원의 수입결손이 발생하였음.

〈최근 4년간 기타수입 수입 편성 및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A)	601	601	601	601
실적(B)	127	108	144	442
수납률(B/A)	21.1	18.0	24.0	73.5
수입결손(B-A)	△474	△493	△457	△159

(자료: 한국소비자원)

- 교육연수 수입은 외부기관 교육 의뢰에 따른 강사료 수입으로 매년
10% 이하의 수납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4,000만원의
수입 예산을 편성⁵⁹⁾하여 3,900만원의 수입 결손이 발생하였음.

〈최근 4년간 교육연수 수입 편성 및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A)	40	40	40	40
실적(B)	9	3	4	1
수납률(B/A)	22.5	7.5	10	2.5
수입결손(B-A)	△31	△37	△36	△39

(자료: 한국소비자원)

57) 청사 1층 농협은행 및 지역 자활센터 카페

58) 한국소비자원은 과거 법인세 환급, 청사 공사 관련 지체 보상금 등 일시적 특이소요에 따라 증가한 기타 수입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6억 100만원으로 유지한 것으로 설명함.

* ('17~'19년도 평균) 560백만원 / ('19년도) 600백만

59)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과거 기관이 학교·정부기관·기업체 등에 대한 직접 교육 위주의 사업을 활발히 수행해 왔던 시기에 편성(2017년도 ~)된 것으로서, 2024년도까지 유지되어 온 것으로 설명함.

- 이러한 자체수입의 과다 계상은 수입 예산 수납률 저하의 원인이 되며, 이는 수지차보전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지출소요를 충당하지 못해 소비자 안전 및 시험검사, 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 고유 업무의 안정적 수행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향후 한국소비자원은 자체수입 예산 편성 시 과거 수입 실적의 추이와 실제 수요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입예산을 추계하여,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결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역량강화 및 정보제공: 정보화사업 집행 관련규정 준수 필요

□ 소비자역량강화 및 정보제공은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생활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 친환경 소비문화 확립 등 지속 가능한 소비생태계 조성 등을 위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소비자역량 강화, 소비자원 정보화, 소비자 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2024회계연도 사업출연금 예산 31억 4,900만원 중 30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9,7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6.9%임.

〈2024회계연도 소비자역량강화 및 정보제공〉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집행액(B)	집행률(B/A)	예산액
	본예산	수정예산(A)			
▪ 소비자역량강화 및 정보제공	3,237	3,149	3,052	96.9	2,787
- 소비자 정보제공	413	395	386	97.7	369
- 소비자역량 강화	135	135	106	78.5	121
- 소비자원 정보화	2,553	2,483	2,448	98.6	2,176
- 소비자 홍보	136	136	112	82.4	121

(자료: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원 정보화는 기관 대표 홈페이지 운영,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정보보호 및 보안시스템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2024년도 사업출연금 수정예산 24억 8,300만원 중 24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2024회계연도 소비자원 정보화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본예산	이·전용 등	수정예산(A)	집행액(B)	집행잔액(A-B)
▪ 소비자원 정보화	2,553	△70	2,483	2,448	35
- 여비	9	-	9	7	1
- 일반수용비	212	-	212	211	1
- 일반연구비	2,228	△88	2,140	2,118	21
- 업무추진비	3	-	3	2	1
- 공공요금	51	38	89	88	1
- 자산취득비	5	-	5	-	5
- 시설장비유지비	46	△20	26	21	5

(자료: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에 소비자원 정보화를 위해 일반연구비로 수정예산 2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9억 4,500만원, 인공지능기반 소비자 민원처리 통합플랫폼 3차 구축⁶⁰⁾에 11억 5,100만원, 인공지능기반 소비자 민원처리 통합플랫폼 3차 구축 감리용역비로 2,200만원을 집행하여 21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음.

60) 모바일을 통한 지능형 소비자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소비자민원처리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3개년 사업, 2022 ~ 2024), 모바일 기반의 온라인 채팅서비스 제공, 24시간 비대면으로 운영 가능한 챗봇 시스템 구축 등을 사업내용으로 함.

〈2024년도 소비자원 정보화 일반연구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이·전 용	수정예산	집행액	계약금	(계약기간)
소비자원 정보화 (일반연구비)	2,228	△88	2,140	2,118	2,225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058	△88	970	945	1,052	(주) 오파스넷 (2024. 3. ~ 12.)
- 인공지능기반 소비자 민원처리 통합플랫폼 3차 구축	1,170	-	1,170	1,151	1,151	(주) 그노티 (2024. 7. ~ 12.)
- 인공지능기반 소비자 민원처리 통합플랫폼 3차 구축 감리용역	-	-	-	22	22	한국정보평가원(주) (2024.9 ~ 12)

(자료: 한국소비자원)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는 계약기간 전체 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2024. 1. 1. ~ 2025. 12. 31.)으로 진행하였는데, 2024년 1월 17일에 입찰공고를 하여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주) 오파스넷을 선정하고, 2024년 3월 28일에 계약기간을 2024년 3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계약금액을 1,052,297,950원으로 하는 1차 계약을 체결함.

〈2024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계약 내역〉

- 입찰공고일: 2024. 1. 17.
- 입찰공고기간: 2024. 1. 17. ~ 2024. 2. 20.
- 계약일: 2024. 3. 28.

- 계약방식: 제한경쟁, 장기계속계약
 - 계약업체: (주) 오파스넷
 -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2,104,595,900원(2024. 3. 28. ~ 2025. 12. 31.)
 - 1차: 1,052,297,950원(2024. 3. 28. ~ 2024. 12. 31.)
 - 2차: 1,052,297,950원(2025. 1. 1. ~ 2025. 12. 31.)
 - 주요 과업내용
 - 한국소비자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정기(월간, 분기 등) 점검, 장애 지원 및 기술 지원 등을 수행하는 유지관리 업무 수행
- (자료: 한국소비자원)

□ 2024년 소비자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1월분부터 11월분의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로 총 9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12월분은 2025년 1월 23일에 2025년 사업출연금 예산으로 8,8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구분	내용	지급일	집행액
2024	2024년 1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2024.03.06.	80,833,330 ⁶¹⁾
	2024년 2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2024.03.06.	80,833,330
	2024년 3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2024.04.23.	81,718,230
	2024년 4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2024.05.21.	87,691,495
	2024년 5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2024.06.13.	87,691,495
	2024년 6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2024.07.10.	87,691,495
	2024년 7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2024.08.09.	87,691,495
	2024년 8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2024.09.13.	87,691,495
	2024년 9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2024.10.17.	87,691,495
	2024년 10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2024.11.22.	87,691,495

구분	내용	지급일	집행액
	2024년 11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2024.12.13	87,691,495
소 계			944,916,850
2025	2024년 12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대금	2025.01.23	87,691,495
총 합 계			1,032,608,345

(자료: 한국소비자원)

□ 그런데, 「국가재정법」⁶²⁾에서는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4년에 수행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를 2025년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연말까지의 서비스 품질 유지 및 업체의 책임성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 12월 용역에 대한 서비스 수준 계약(SLA)⁶³⁾ 평가를 2025년 1월 초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함.

□ 한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⁶⁴⁾에서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

61) 계약체결 전까지인 1월부터 3월 27일까지 2023년도 요율을 적용하여 기존업체(주 오파스넷)에 지급함.

62)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63) 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합의된 서비스 수준을 명시하는 계약

64) 「2024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 p32.

□ 매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관리비 12월분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편성된 일반연구비 8,800만 원을 이월하지 않고, 분쟁조정사업의 일반수용비(4,800만원), 일반용역비(400만원), 공공요금(3,600만원)으로 2024년 12월 23일에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소비자원 정보화사업 일반연구비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구분	전용 전	전용 후	금액
		과목	과목	
2024-12-23	(항)간 전용	(관)사업비-(항)정보교육-(세항)소비자원정보화-(목)일반연구비	(관)사업비-(항)분쟁조정-(세항)분쟁조정위원회-(목)일반수용비	48
			(관)사업비-(항)분쟁조정-(세항)분쟁조정위원회-(목)일반용역비	4
			(관)사업비-(항)분쟁조정-(세항)피해구제-(목)공공요금	36
합 계				88

(자료: 한국소비자원)

-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 기관장은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 금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이러한 전용제도는 「국가재정법」 제45조⁶⁵⁾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2024년도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⁶⁶⁾에 따르면 기관장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내에서 자체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⁶⁷⁾에 따르면, 정보화 예산은 원칙적으로 동 지침의 자체 이·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재해대책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이·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원 정보화 사업비를 분쟁조정 사업에 집행을 것은 「2024년도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및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음.

65)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66) 「2024년도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31p. 기관장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내에서 자체 전용할 수 있다.

67)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정보화 관련 예산 86p.

○ 정보화사업의 범위: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 하기 위한 사업,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기타 정보화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

○ 정보화예산은 원칙적으로 동 지침의 자체 이·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이·전용하여 집행할 수 없다.

- 다만, 재해대책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따라서 정부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는 한국소비자원은 예산집행에 있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등 국가회계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 등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은 공정거래 및 경쟁정책 연구,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사업자 간 분쟁의 조정, 가맹·대리점종합지원, 공정위 수탁 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함)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 조정원의 2024회계연도 수입액(수입실적)은 공정위 출연금 117억 4,200만원 등 139억 2,700만원이고, 지출액(집행액)은 인건비 75억 4,400만원, 운영비 25억 5,000만원, 사업비 26억 4,100만원 등 총 138억 3,400만원(집행률 97.2%)임.

〈2024회계연도 조정원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 예산	수정 예산 (A)	수입 실적 (B)	차액 (B-A)	비율 (B/A)
1. 정부출연금	11,742	11,742	11,742	-	100.0
2. 기타수입	1,269	1,269	1,086	△183	85.6
3. 수탁사업비	1,222	1,222	1,099	△123	89.9
수 입 합 계	14,233	14,233	13,927	△306	97.9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4회계연도 조정원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집행 (B)	차액 (A-B)	집행률 (B/A)
1. 인건비	7,622	7,622	7,544	78	99.0
2. 운영비	2,591	2,591	2,550	41	98.4
3. 사업비	2,798	2,798	2,641	157	94.4
- 분쟁조정	637	637	624	13	98.0
- 공정거래연구	513	513	443	70	86.4
- 협약이행평가	323	323	316	7	97.8
- 공정거래전문교육	181	181	174	7	96.1
- 가맹종합지원	253	253	238	15	94.1
- 대리점종합지원	325	325	304	21	93.5
- 동의의결이행관리	17	17	15	2	88.2
- 시정조치이행관리	110	110	92	18	83.6
- 전산운영지원	90	90	88	2	97.8
- 차세대분쟁조정사건처리시스템	349	349	347	2	99.4
4. 수탁사업비	1,222	1,222	1,099	123	89.9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304	304	303	1	99.7
- CP등급평가	321	321	320	1	99.7
- 기술자료비밀보호컨설팅	53	53	-	53	-
- 경쟁영향평가 연구	320	320	272	48	85.0
- 하도급연동지원본부	224	224	204	20	91.1
합 계	14,233	14,233	13,834	399	97.2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검토의견

(1) 공정거래연구사업: 자체수입사업으로 수탁연구 편성·집행 필요

- ☐ 조정원의 출연사업 중 공정거래연구는 경쟁당국의 합리적인 경쟁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법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산업별 경쟁 제한성 분석 및 업종별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연구하는 사업임. 2024회계연도 사업출연금 예산 5억 1,300만원 중 4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7,0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86.4%임.

〈2024회계연도 공정거래연구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결산액 (B)	잔 액 (C=A-B)	집행률 (D=B/A)
공정거래연구	513	443	70	86.4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 2024년 조정원의 공정거래연구 실적을 살펴보면, 정책연구 3건, 이슈 검토 12건,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3건, 수탁연구 1건을 실시하였음.

〈2024년 조정원 공정거래연구 실적〉

구 분	연 번	연구주제
정책 연구	1	(보안과제) 000 연구
	2	(보안과제) 000 기준 개선안 마련
	3	(보안과제) 000 방안 연구
이슈	1	국내 Compliance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비교 고찰

구 분	연 번	연구주제
검 토	2	골판지 제조·유통 등에 대한 시장분석
	3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 분석 I -가정용 맥주 시장을 중심으로-
	4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 분석 II -인천공항 면세점 주류·담배 독점사업권 폐지의 경제적 효과 분석-
	5	가정용 캔 맥주 시장 수요함수 추정을 통한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의 후생 효과 분석
	6	2024년도 경쟁영향평가 사례분석 -경쟁영향평가 지문용역 사업을 중심으로-
	7	(보안과제) OOOOO 개선 과제
	8	공법과 사법 간 틈 메우기 -국고행정에 관한 독일의 경쟁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9	호텔예약플랫폼의 최혜대우 조항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10	편의점 산업 시장 현황 검토 -체인화 편의점 사업체를 중심으로-
	11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과 관련한 경제적 단일체 항변에 대한 고찰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12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1	디지털 경제에서 온오프라인 서비스 간 관계를 고려한 경쟁법 집행 방향에 관한 연구 - 온·오프라인 쇼핑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2	미국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신 법집행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3	EU의 배제남용 행위 규제와 관련한 최근 법집행 변화에 관한 연구
수탁연구	1	(보안과제) OOO 연구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조정원의 「연구업무규정」 규정에 따르면, 수탁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으로, 2024년 사업출연금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819만원을 집행하고 1,181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은 40.9%임.

○ 2024년 조정원의 수탁연구는 총 1건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받

은 과제(계약금액 36백만원)를 수행함.

- 조정원은 과제 수행 인력이 전원 조정원 소속 연구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건비는 조정원 자체 예산에서 충당되었으며, 수탁연구예산에서는 회의비, 자료구입비, 소모품비 등 직접비 약 819만원만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2024년 조정원 공정거래연구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A)	결산액 (B)	잔 액 (C=A-B)	집 행 률 (D=B/A)
공정거래연구사업비	513,000	443,415	69,585	86.4
일반수용비	164,558	162,748	1,810	98.9
특근매식비	10,368	9,179	1,189	88.5
임차료	15,856	15,392	464	97.1
여비	37,163	16,167	20,996	43.5
업무추진비	19,000	18,794	206	98.9
연구용역비	84,000	65,946	18,054	78.5
공공요금	7,691	7,691	0	100
상용임금	91,964	78,819	13,145	85.7
일용임금	50,400	49,804	596	98.8
수탁연구	20,000	8,187	11,813	40.9
자산취득비	12,000	10,688	1,312	89.1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12조⁶⁸⁾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탁연구는 조정원의 설립 근거 및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⁶⁹⁾에 근거가 없어 타 기관의 위탁용역 사업을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수탁연구를 출연금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수행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 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해 타 기관에 편성된 예산으로 수탁연구용역비를 별도로 지급받아 기타 수입으로 수납하는 등 연구용역 위탁기관과의 예산 중복편성의 문제가 있음.

68)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3.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5.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제89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결의 이행관리
 6.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7. 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8.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② 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조정원의 장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⑤ 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연구사업 중 수탁용역 수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위탁기관	수탁연구 용역명 (계약기간)	사업출연금 예산			위탁기관 예산		
			예산	집행	잔액	예산	집행	잔액
2020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매뉴얼 개발 연구(2020. 2. 5. ~ 2020. 6. 4.)	20	20	-	18	-	18
	한국전시 산업진흥회	전시산업 분야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용역(2020. 11. 6. ~ 2020. 12. 18)				18	-	18
2021	공정위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가맹분야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지침) 마련(2021. 6. 1. ~ 2021. 9. 30.)	20	8	12	23	-	23
2022	공정위	2022년 공정거래정책 학술 심포지엄 행사 용역위탁(2022. 11. 30. ~ 2022. 12. 2.)	20	11	9	11	-	11
2023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관련 위반금액 산정기준 개선방안 연구(2023. 4. 10. ~ 2023. 8. 31.)	20	3	17	6	-	6
		OOO 시장 분석(2023. 10. 20. ~ 2023. 11. 24.)				3	-	3
2024	기재부	OOO 연구(2024. 8. 20. ~ 2024. 12. 20.)	20	8	12	36	-	36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따라서, 향후 조정원은 수탁연구비를 사업출연금예산으로 편성·집행하기 보다 자체수입 사업의 하나인 수탁사업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2) 전산운영지원 사업: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사용규정 등 준수 필요

- 조정원의 출연사업 중 전산운영지원은 조정원 정보화시스템의 통합유지관리 사업임. 2024회계연도 사업출연금 예산 9,000만원 중 8,800만원을 집행하고 2백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97.8%임.

〈2024회계연도 전산운영지원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결산액 (B)	잔 액 (C=A-B)	집행률 (D=B/A)
전산운영지원	90	88	2	97.8
- 관리용역비	90	88	2	97.8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조정원의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은 홈페이지 등 서버, 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그룹웨어 시스템, 온라인분쟁조정 시스템, 콜센터시스템 등의 정보화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함.

〈조정원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대상〉

구 분	대 상	세 부 항 목	수 량
정보화시스템	서버(H/W)	· 홈페이지,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DB 서버 등(OS 포함)	6대
	스토리지	· 데이터 저장용 (NAS 저장소)	2대
	그룹웨어 시스템	-	1식
	온라인분쟁조정	-	1식

구 분	대 상	세 부 항목	수 량
	시스템		
	콜센터시스템	-	1식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호 및 상용소프트웨어	· 백업 솔루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문서보안솔루션 등	3종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입찰공고문)

□ 조정원은 이러한 정보화시스템의 통합유지관리를 위해 입찰공고(제한 경쟁, 협상에의한 계약)를 실시하였으나 단일 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 후 주식회사 튜시스템과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6,961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2024회계연도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계약 내역〉

- 입찰공고일 : 2024. 3. 5.
- 입찰공고기간 : 2024. 3. 5. ~ 2024. 3. 25.
- 계약일 : 2024. 4. 30.
- 계약방식 : 수의계약*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계약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제1호
- 계약업체 : (주)튜시스템
- 계약금액 : 69,610,000원
- 계약기간 : 2024. 5. 1. ~ 2024. 12. 31.
- 주요 과업내용
 - 정기적인 정보화시스템 점검
 - 장애 발생 시 처리
 - 시스템 데이터 백업 및 기타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 실시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한편,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의 낙찰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조정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근태관리 커스텀 구축 용역 등을 추가로 진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전산운영지원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집행액 (B)	잔 액 (C=A-B)
전산운영지원(관리용역비)	90	88	1.9
-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90	63	
- 근태관리 커스텀 구축용역	-	22	
- 공정거래교육센터 유지보수	-	2	
- 더존 Bizbox Alpha 이메일 사용자 라이선스 구매	-	1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그러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⁷⁰⁾에 따르면, 조정원의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는 정보화사업에 해당하고, 정보

70)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정보화 관련 예산 86-87p.

- 정보화사업의 범위: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 하기 위한 사업,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기타 정보화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
-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 **다만,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의 부족분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 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 안보 및 재난·재해·사고 관련 긴급보강 소요, 국무회의 등 정책결정을 거쳐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계속 사업의 당해연도 계획대비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거나, SW사업 과업 확대에 따른 추가과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도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나, 법령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하되, 정보시스템 보안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 등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낙찰차액을 활용한 신규사업은 추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낙찰차액 사용은 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조정원은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를 위해 총 9,060만원⁷¹⁾을 집행하였는데, 전산운영지원에서 6,270만원을 집행하고, 분쟁조정에서 870만원을, 기관운영출연금의 관리용역비에서 1,92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편성·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액 ⁷²⁾	집행액	비고
사업 출연금 (350-02)	전산 운영 지원	90	62.7	- 3월·4월(5,269천원×2개월) - 5월 ~ 10월(8,701천원×6개월)
	분쟁 조정 (콜센터)	15.6	8.7	- 12월(8,701천원)
기관운영 출연금(350-01)		-	19.2	- 1월·2월(5,269천원×2개월) - 11월(8,701천원)
합 계		105.6	90.6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출자료 재구성)

71) 2024회계연도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2024. 4. 30.) 전인 1월부터 4월까지 21,076천원(2023회계연도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에 준하여 매월 5,269천원을 기존 업체에 지급)을 집행하고, 5월부터 12월까지(계약기간: 2024. 5. 1. ~ 2024. 12. 31., 매월 8,701천원을 계약업체에 지급) 계약금액 69,608천원을 집행하였음.

- 정부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예산집행에 있어 국가회계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정원은 「국가재정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국가재정법」 제45조⁷³⁾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⁷⁴⁾에는 기관운영출연금(350-01)과 사업출연금(350-02) 간의 비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기재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 간의 비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사업출연금 예산사업비를 집행한 점 등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국가재정법」 상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72) 2024년도 각목명세서상 편성된 내역

73)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74)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일반출연금 예산 202p.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출연기관의 예산 집행을 본 지침에 따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출연금의 비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일반출연금 중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과 사업출연금(350-02목)간의 비목 변경, 또는 연구개발출연금 중 인건비(360-01목)와 경상경비(360-02목)의 비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개별사업 출연금을 예산 편성시 협의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 다만,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2024회계연도 기관운영출연금 중 관리용역비 결산내역〉

(단위: 천원)

예산		집행내역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관리용역비	631,610	관리용역비	630,878
- 청사공간 관리비	591,962	- 청사공간 관리비 등	571,111
- IDC센터 서버 위탁관리비	34,848	- IDC센터 서버 위탁관리비	34,848
- 통신장비 유지보수	4,800	- 통신장비 유지보수	4,800
- 단수조정	1	-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9,239
		- 그룹웨어 장애 발생에 따른 기술지원	880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출자료 재구성)

□ 이러한 예산집행은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의 목적이나 관련된 예산의 전체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향후 조정원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운영출연금을 사업출연금 사업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25.7.31)
(1) 예산 집행절차 적절성 제고 필요	○ [지적사항] 다수의 세부사업에서 해당 예산이 부족하여 다른 세부사업(또는 다른 비목)으로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전용 또는 조정을 통해 지출과목을 정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운용하였음 - 이는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한 「국고금 관리법」 제20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예산 전용 등을 통해 먼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한 후 지출하는 것이 적절함 과목정정을 통한 예산 집행과정에서 부주의한 집행관리로 잘못된 집행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후관리도 미흡하였음 - ‘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사업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부 과목정정 누락이 발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출장 여비(220-01)가 일반수용비(210-01)로 잘못 집행되었음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항목별 예산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 조정 등 해당 항목의 예산확보 절차를 선행한 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도 부적정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	주의	○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적정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음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항목별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예산 조정을 통한 해당 항목의 예산확보 후 집행을 하도록 주의사항 교육을 2회 실시 함 ○ 조치완료일: 2024년 12월 5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25.7.31)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 [지적사항] 국내출장 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2022년 12월에 수행한 국내출장 26건과 관련한 여비 2,301,560원을 2023년도 예산으로 지급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4차례에 걸쳐 자체전용 등을 통해 국내여비 재원을 확보하였는데, 전년도 여비를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함으로써 그 금액만큼 불필요한 예산 전용의 추가 소요가 발생함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예산집행 시 보다 면밀히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집행함으로써 전년도 여비를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의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주의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담당자 교육을 강화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2024년 6월 27일 집행담당자 대상으로 결산 오류사례 설명, 2023회계연도 지적사항, 집행 업무시 유의사항 등 교육 실시 - 2024년 12월 5일 집행담당자 대상으로 최근 5개년 주요 결산 지적사항 및 유의점 등 교육 실시 ○ 조치완료일: 2024년 12월 5일	조치완료
(3) 부실한 자율규제 제도 운영	○ [지적사항]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2023.3.) 발표에 있어 소상공인과 입점업체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여 운영되고 있음. 자율규제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한 감독이 필요함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제 제도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입점업체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율규제 방안을 검토·보완할 것	제도개선	○ 24년 7월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 공익위원 4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을 검토한 상생방안을 마련하였음(2024.11.14.) - 참고로, 2024년 4월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에서는 배달플랫폼 5개 사업자와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여 입점업체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음(2024.4.23.) ○ 조치완료일: 2024년 11월 14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25.7.31)
(4) 분쟁조정사업의 적극적 추진	○ [지적사항] 2023년도 분쟁조정 사건의 종결사건을 포함한 전체 처리건 대비 조정성립률은 41%이며, 종결사건을 제외한 처리건 대비 성립률은 79%로서 성립률 제고가 필요함. 또한 2023년 처리 사건 중 협의회가 조정안을 제시한 비율은 3.3%로서 전년 대비 감소 추세임 ○ [시정요구사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해 조정 불성립 원인을 분석하고 분쟁조정 성립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2022년 이후 분쟁조정 사건이 연평균 약 24% 증가한 점, 경기 악화 등에 따른 자력에 의한 지급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조정 불성립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각 팀 별 숙련 직원을 중심으로 분쟁조정인력을 추가배치하였음 ○ 2024년에는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여 11월말 기준 분쟁조정 처리사건 중 협의회가 조정안을 제시한 비율은 5%로서 전년 대비 1.7%p 증가하였음 ○ 향후에도 당사자 대면 조정을 원칙화하고 대면조정 시 상임위원이 적극 참여하는 등 조정절차 진행방식을 강화하여 조정성립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5) 수탁연구용역 확대필요	○ [지적사항] 2023년도 기타수입 중 수탁연구용역 수입예산은 2,300만원이며 공정위로부터 2건의 연구용역을 수탁하여 900만원(39.1%)의 수입실적을 달성함 - 최근 5년간 수탁연구용역 수입예산 대비 수입실적은 연례적으로 저조하며, 수탁연구용역 수행과제는 연간 한 건 내지 두건에 불과함 ○ [시정요구사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구용역 추가 수행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제도개선	○ 2024년도 기타수입 중 수탁연구용역 수입예산은 5,500만원이며 로부터 수탁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3,636만원(66.1%)의 수입실적을 달성함 - 앞으로도 연구용역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용역 수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탁연구용역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25.7.31)
(6) 온라인 교육과정 정비 및 홍보 강화 필요	○ [지적사항]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정거래교육센터)의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통한 교육과정 중 수료자 수가 100명 미만인 교육과정이 다수 있음 - 10명 이상 수료한 교육 프로그램 64개 중 교육 프로그램의 수료자 수가 100명 미만인 강의가 50개 (78.1%)이고, 50명 미만인 강의는 40개(62.5%)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의 수료자 수가 100명 미만임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공정거래교육센터의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교육플랫폼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 교육을 보다 활성화할 것	주의	○ 공정거래교육센터 교육과정 운영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요자 선호도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정비하였고, 2024년 11월말 기준, 운영 중인 전체 교육과정 33개 중 수료자 수가 100명 이상인 강의가 28개(84.8%)임 - 공정거래교육센터의 2024년 11월말 기준 수료자 수는 총 26,780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40%(15,625명) 증가함 ○ 교육플랫폼 홍보 및 이용자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 총 2,100여 곳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홍보영상 제작 및 교육 수료 이벤트 등의 다각적 홍보활동을 추진함 ○ 조치완료일: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25.7.31)
(7)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정거래협약 체결 후 공정위가 그 이행실적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주요 사업자들의 자율적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운영 중임 - 2023년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체결 실적 대비 협약이행평가 실적은 52.1%(198/380)로, 가맹·유통·대리점거래 분야의 협약이행평가 실적이 각각 62.5%(10/16), 96.2%(25/26), 90.9%(10/11)인 점과 대비하여 현저히 낮음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공정위 예규) 개정 (2024.12.23.) - 협력사의 협약 체결 및 평가 신청 개선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함으로써, 대기업에서 중견·중소기업으로 협약평가 확산을 유도 ○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 등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2024.12.16.) - 협약 우수기업을 표창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협약제도를 홍보하고 관심 기업들의 참여도 제고 ○ 조치완료일: 2024년 12월 23일	조치완료
(8) 자율분쟁조정위원 회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최근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처리건수 등 그 실적이 감소추세임 - 소비자피해 분쟁조정 성립건수 또한 감소추세임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자율분쟁 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실적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 분쟁조정 실적 제고를 위해 신청 양식 간소화 및 1372 소비자 상담의 전자적 이관 체계 마련(2024.5.), 공식 블로그 운영 개시(2024.8.), 분쟁조정 사례집 공유 및 지자체 안내 (2024.9.)를 실시하였음 ○ 조치완료일: 2024년 9월 30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25.7.31)
(9)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 지원 인원 축소 및 매칭 비율 악화	○ [지적사항] 내역사업 청년소비자 역량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중 소비자교육봉사사업은 당초 목표한 1:1 매칭을 통한 교육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채 사업이 종료됨 - 목표인원을 노인층 10,000명, 봉사활동 수행 중·고등학생 10,000명으로 설계하여 1:1 매칭을 계획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중·고등학생 2,119명을 모집하여 노인층 7,037명에 대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함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유사 사업의 민간 참여가 필요한 경우 참여대상별로 적절한 유인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 시 적정 수준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연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주의	○ 2014년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관련 사업 중단 ※ 향후 민간 참여가 필요한 유사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참여 대상별로 적절한 유인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 목표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여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20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25.7.31)
(10) 출연금을 통한 수탁용역 사업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고유사업인 ‘연구조사 및 대외협력’사업의 대외협력비 일부 3,900만원을 수탁사업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 사업에 집행하여 출연금 산정 시 계획했던 고유사업의 수행의 축소가 우려됨 -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공정위의 위탁용역비 및 사업자의 심사비용을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사전 진단 업무 수행을 위해 고유사업비를 집행함 ○ [시정요구사항] 한국소비자원은 고유사업과 수탁사업간 설정을 명확히 하고, 고유사업비와 수탁사업비를 구분하여 관리할 것	제도개선	○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비용은 수탁용역비로만 집행하겠음 - 향후 고유사업비와 수탁용역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고유사업 수행의 축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11) 집단분쟁조정 활성화 필요	○ [지적사항]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실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23년 집단분쟁조정 접수건수는 2건에 불과 ○ [시정요구사항] 한국소비자원은 대규모 집단 사건 조정을 통해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제도개선	○ 정부 및 지자체·소비자단체와 소비자피해 사례의 신속한 공유·협력을 통해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음 -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착수하는 등 집단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25.7.31)
(12) 조직개편 취지에 적합하도록 인사제도 개선	○ [지적사항] 공정위는 2023년 4월 기능별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음 ○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의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위 운영의 활성화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8월 기준 공정위는 72개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있으나 23개 직위에 대하여 전문관을 선발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장급 5개 전문직위는 모두 전문관을 선발하지 아니함 * 인사혁신처는 2022년 및 2022년 전문직위제도 운영 부적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관주의 처분 등을 한 바 있음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집행의 공정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 조직개편 취지에 적합하도록 전문직위 운용 활성화 등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 공정위는 조직개편 취지에 맞추어 전문직위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매년 정기전보 또는 비정기적 휴직 등으로 인한 전문직위 결원 발생 시 추가 전문관 보임을 통해 전문직위 운용을 활성화하고 있음 - 공정위는 2023. 4. 14. 조직개편에 따라, 전문직위 신설·해제 수요를 반영하고 부서별 업무분장에 맞추어 2023년 6월 전문직위 전반에 대한 정비*를 진행한 결과, 조직개편 이전 71개 전문직위에서 1개 늘어난 72개 전문직위를 운영 중임 * 전문직위 8개 신설, 7개 해제, 11개 직무내용 변경 - 또한, 전문관 선발 비율도 조직개편 이전 62% 수준에서 현재 68% 수준으로 향상되었음 * 2022년 12월(조직개편 이전): 전문관 선발 비율 62.0%(44/71) ' 24년 12월(현재, 조직개편 이후): 전문관 선발 비율 68.1% (49/72) ○ 조치완료일: 2024년 12월 1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25.7.31)
(13) 계약법령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필요	○ [지적사항] 물품관리 유지보수를 위하여 월 3,074,400원, 1년간 총 계약금액 36,892,800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서 일반 경쟁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으나, 공정위는 당해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 또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을 계약기간으로 하고있으나, 1년간 자동연장된다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2023년도까지 계약금액을 지급하였음. 이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 원인행위를 하도록 정하는 「국고금 관리법」에도 부합하지 않은 집행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관리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경쟁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단년도 계약으로 다년간 예산을 지출하였으므로 계약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할 것	주의	○ 기존 계약은 2024.10.31. 종료되었으며, 경쟁입찰을 거쳐 2024.11.26. 물품관리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기간은 12개월(2024.12.1.~2025.11.30.)이며 계약금액은 36,840,000원임 ○ 조치완료일: 2024년 11월 26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25.7.31)
(14) 영상회의장비 활용 제고	○ [지적사항] 공정위는 세종심판정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사비 997만원, 자산취득비 8,999만원 등 약 1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 2023년 9월 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 2024년 5월까지 영상회의를 실시한 실적이 없으며, 2024년 6월 및 7월 각 1건의 영상회의를 실시하였음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피심인은 심의기일에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는 등 원격 영상회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영상시스템을 활용한 심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심판정에도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상장비를 활용한 심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	제도개선	○ 현재도 영상으로 출석이 가능하나,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겠음 - 아울러, 장기적으로 서울 심판정에도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음 ○ 조치예정일: 2025년 12월 31일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25.7.31)
(15)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제 개선책 필요	○ [지적사항]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전원회의 불참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남 - 현행 안건 검토수당, 회의참석수당은 검직에 따른 이해 충돌 우려, 민감한 안건을 다루는 것에 대한 부담은 물론 안건 검토와 회의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업무 과중도에 비례하지 못함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관련 수당을 개선하고, 비상임위원의 수를 확대하거나 비상임위원의 수를 줄이고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 비상임위원 지급수당 인상안을 마련하여, 2026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되도록 하겠음 - 아울러, 장기적으로 상임위원 증원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음 ○ 조치예정일: 2025년 12월 31일	조치중
(16) 예산 집행 절차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 [지적사항]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 행사 대행 용역'을 위하여 일반용역비 2,2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행사를 실시하고 행사종료 후 사후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상 계약기간 : 2023. 1. 13. ~ 2. 12. - 계약일과 지출원인행위일 : 2023. 2. 27. - 용역의 과업 내용 및 그에 대한 반대 급부의 지급을 상호간에 확정하는 계약의 선행이 예산 집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점을 고려하면, 사후계약 체결은 법령상 허용되기 어려운 부적정한 집행방식임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보고 등 행사 진행시 행사가 진행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주의	○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예산 집행 철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약 절차 준수 ○ 조치완료일: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25.7.31)
(17)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 [지적사항] 자료발송 등을 위한 우편요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022년 12월에 발생한 우편요금 84만 6,500원을 2023년도 예산으로 지출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말 우편요금의 소요금액을 사전에 파악한 후 ‘기본경비 이월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재정법」을 준수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제도개선	○ 연말에 발생한 공공요금 등을 미리 파악하여 기본경비 이월 제도를 활용 「국가재정법」을 준수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이에따라 2024년 12월에 발생한 공공요금(6,437,590원)은 차년도 이월예산으로 지출 완료 ○ 조치완료일: 2025년 1월 20일	조치완료
(18) 지출원인행위 관련 행정절차 지연	○ [지적사항]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지출원인행위(계약)를 하는 경우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도록 함 - 지출원인행위 기재가 지연되는 경우 정해진 세출예산에 비해 지출원인행위가 과도하게 실시되어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금관리법령 상의 행정절차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사실을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할 것	주의	○ 계약체결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사실을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해 국고금관리법령 상의 행정절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집행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음. ○ 조치완료일: 2024년 12월 5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25.7.31)
(19) 과징금 환급업무 조기완료	○ [지적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환급업무가 지연되는 경우, 소송상대방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동시에 연 3.5%의 이율로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국가재정의 불필요한 수입감소가 발생하게 됨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예규)을 통해 최대 8근무일 이내에 과징금 환급 조치를 완료하도록 정함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과징금 환급업무가 시작된 18건의 경우, 과징금 환급조치 완료까지 평균 13.8일을 소요하였고, 그 중 12건(66%)은 판결문 등이 접수된 날부터 8근무일을 초과하여 환급업무를 완료하였음 과징금부과처분이 일부취소된 9건의 경우, 과징금 재산정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원금만을 환급하고 환급가산금은 2023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지급하지 못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환급업무를 조기에 완료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산권 침해 및 가산금 발생을 방지할 것	주의	○ 과징금 환급은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환급절차 관련 안내 및 교육 강화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당해연도(2024년)의 경우 환급업무 소요기간은 평균 7.23 근무일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다만, 원사건과에서 판결 취지에 대한 검토 등 환급 조치를 요청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징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 재산정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환급 관련 필요서류*를 환급 대상 사업자에게 제출받아 업무지원팀으로 환급조치를 요청하기까지 시일이 다소 소요됨 * ① 외국사업자의 경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상 국내 은행계좌로만 환급업무가 가능하여 사업자의 국내 은행 계좌 개설 등에 시간이 소요되며, ② 국내사업자의 경우 내부 보고(승인)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 ○ 조치완료일: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25.7.31)
(20)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예산 반영 필요	○ [지적사항]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선임료 부족으로 기타운영비 6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세목조정하였고, 소송비용부담액 부족으로 일반수용비 650만원을 배상금으로 전용하였음 2022년도 및 2021년도에도 변호사 선임료 부족으로 국내여비를 일반수용비로 전용하는 등 변호사 선임료 부족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 수임료 부족으로 인한 연례적 예산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 적절한 변호사 수임료를 반영하는 한편 직원 직접소송 승소사건 격려금을 인상하여 직접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	주의	○ 2025년도 예산의 경우 변호사 선임 예산을 '24년도 대비 6억 원 증액하였음(국회본회의 통과 2024. 12. 10.) - 향후 변호사 수임료 관련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직접소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2024년 12월 10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25.7.31)
(21) 장기계속계약 시 1차년도 사업지연에 따른 차년도 사업의 연쇄적 예산이월 유의 등	○ [지적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데이터포털 구축사업을 장기 계속계약의 형태로 추진하면서 1차년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차년도, 3차년도 사업 모두 예산의 일부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함 - 2021년 ‘데이터포털 구축사업 1차’사업 계약 과정에서 당 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일정이 지연되어 2021년, 2022년, 2023년 모두 사업 예산 중 일부(잔금 50%)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함 ○ 데이터포털 구축감리’ 사업의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액 이월하여 사업 종료 후 집행함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은 선금 지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 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감리업체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함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장기계속계약 방식 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1차년도 사업 지연에 따른 연쇄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요청이 없더라도 선금지급 불가사유 등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할 것	주의	○ 향후 장기계속계약 사업 추진 시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의 연쇄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또한, 계약상대자의 선금 지급 요청이 없더라도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지급 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겠음 ○ 조치완료일: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25.7.31)
(22) 과징금 임의채납액에 따른 장기 미수납액 증가 문제	○ [지적사항] 2023회계연도 과징금 미수납액 중 임의채납에 따른 미수납액은 780억 600만원으로 2020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임의채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7.4%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함 ○ 국회 결산심사 시 제재 처분의 실효성 확보에 저해되므로 임의채납액을 최소화하라는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의채납액이 증가함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채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재산조사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강제징수 등을 통해 채납액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할 것	제도개선	○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채납자 은닉재산 파악과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전자압류시스템*을 통해 예금을 추심하는 등 징수를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음 ※ 다만, 과징금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와 달리 우선징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채권으로 채납액 축소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금융기관 계좌 압류 및 추심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 다만, 2024년 말 기준 과징금 채납자 122개사 중 103개사(83.6%)는 폐업, 해산, 청산 등으로 과징금 징수 가능성이 낮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금리 인상, 원자재가 상승 및 경기 악화에 따른 경영난에 기인하여 채납하는 경우가 많아 채납액 축소에 한계가 있음 ○ 조치완료일: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25.7.31)
(23)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노력 제고 필요	○ [지적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공정 위 자체 인력만으로 경쟁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23년부터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용역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전환 이후에도 경쟁제한 규제개선 실적이 예년보다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경쟁영향평가 : 규제가 신설·강화되기 전에 시장 경쟁에 어떠한 영향(진입장벽, 사업자 경쟁요소 제한 등)을 미치는를 분석·평가 ○ 또한 경쟁제한적 규제발굴 및 개선* 건수는 최근 3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실적은 발굴건수(40건)와 개선건수(22건) 모두 최근 5년간의 평균 실적(발굴 42.6건, 개선 25.4건)에 미치지 못하고, 발굴건수 대비 개선건수 비율인 합의비율(55%) 역시 절반을 겨우 상회하는 수준임 *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 다른 행정기관에 의해 이미 제정·개정된 경쟁제한적 법령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실적을 제고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경쟁영향평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제도개선	○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실적 제고를 위해 독과점 및 신산업 등 주요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사업자단체 의견수렴 및 언론 모니터링, 과제발굴을 위한 전문가 용역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연구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보다 시의성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토록 하겠음 ○ 2025년도 2월부터 3월까지 경쟁영향평가(시장분석) 위한 전문가 간담회, 주요 규제 현장 의견 청취, 경쟁영향평가 업무협의 실무 간담회 등 전문가 간담회 10회 수행 ○ 조치완료일: 2025년 3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25.7.31)
(24)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 및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참여 유인 마련	○ [지적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거래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제·개정,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관리,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대리점거래 분야의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 43%로 저조함 - 가맹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참여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저조함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도입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참여 유인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 [대리점분야 표준계약서] 대리점 분야는 타 분야와 달리 업종 및 거래방식 등에 따른 특성이 매우 다양하여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지속적인 제도 설명 및 홍보를 통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올해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43% → 45.3%로 상승하였음 ○ 아울러, 기업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개정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 및 실태를 면밀히 반영하였음 - 올해 표준계약서 개정*시 간담회, 의견조회 등을 거쳤고 작년 대리점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 *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 계약기간 재설정' 내용 신설 - 공급업자들의 수용성, 활용성을 고려하여 개정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6개 업종을 선정하여 우선 개정 ○ 조치완료일: 2024년 10월 16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25.7.31)
			○ [가맹분야 협약이행평가] 협약이행 평가 인센티브 확대 및 컨설팅 실시 등 협약이행평가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가맹분야 협약평가기준 개정 - 정보공개서 표지에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현행 '우수' 등급에서 '양호'등급까지 확대하며, 평가 부진 기업 및 미참여 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개정안 관련 내용으로 2025년 1월 중 설명회 개최 예정 ○ 조치완료일: 2024년 12월 18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25.7.31)
(25) 동일 자율과제의 연례적·관성적 선정 지양 필요	○ [지적사항] 소비환경개선 사업은 자율과제 공모 시 동일 소비자 단체가 제안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선정하였고 2024년에도 유사한 내용을 제안요청함 - 2023년 선정된 자율과제 2건 중 1건의 사업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과제로 연이어 선정되었고, 나머지 1건 역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동일한 과제로 선정됨 - 2024년 일반경쟁입찰로 전환된 '소비환경개선'의 사업범위 중 일부는 과거부터 자율과제로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선정됨 2023년 소비환경개선 사업의 자율과제는 소비환경 조성이라는 당초 사업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ChatGPT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음 - 2023년 '소비자 중심의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 중 실무자교육 내역의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은 당초 사업목적인 소비자 중심의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내용으로는 보기 어려움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환경개선 사업의 자율과제 사업수행 기관과 과제를 다변화하기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노력하고, 소비환경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제도개선	○ 향후 소비환경개선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수행기관과 과제의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 * 다만, 소비자단체의 '소식지(월간 소비자 발간)'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지속 유지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은 소비자운동 실무자들이 AI 중심의 소비환경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며, 2024년에는 해당사업이 폐지되어 실시하고 있지 않음 ○ 조치완료일: 2025년 6월 30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25.7.31)
(26) 자체수입 과다계상에 따른 결손액 발생 및 고유사업 축소 문제	○ [지적사항] 수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규모의 자체수입을 계상함에 따라 결손액이 발생하여 고유사업의 축소로 이어짐 - 2023년도에는 자체수입 항목의 수납실적이 부진하여 총 11억 1,1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기타수입(△4억 5,700만원), 전년도 이월금(△4억 4,600만원), 수탁용역사업수입(△2억 9,400만원) 순으로 괴리가 발생함 - 기타수입의 경우 수납실적과 관계없이 매년 6억 100만원의 동일한 규모로 수입예산이 계상되고 되고 있어 매년 약 75% 이상의 수입결손이 반복됨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수납가능성이 낮은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여 결손액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자체수입 현실화를 통해 적정 규모의 수지차를 반영할 것	주의	○ 수입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자체수입 예산을 373백만원 감액(임대·기타수입 △245백만원, 교육연수수입 △35백만원) - 향후 기관의 자체수입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정 수준의 수지차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2024년 12월 31일	조치완료

